[UCI]I804:24011-200000234337

2007年 8月
博士學位論文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文 一 燮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ystem

-Focus on the Compulsory After Care System-

2007年 8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文 一 燮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를 中心으로－

指導敎授　文　正　珉

이 論文을 法學博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4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文　　一　　燮

文一燮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全 南 大 學 校　　教　授 ..... ㊞

委　員　光州女子大學校　　教　授 ..... ㊞

委　員　草 堂 大 學 校　　教　授 ..... ㊞

委　員　朝 鮮 大 學 校　　教　授 ..... ㊞

委　員　朝 鮮 大 學 校　　教　授 ..... ㊞

2007 年　6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제 *1* 장 序　論 ····· 1

제 *1* 절 硏究의 目的 ····· 1

제 *2* 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제 *2* 장 更生保護制度의 一般的 考察 ····· 6

제 *1* 절 更生保護의 槪念 ····· 6

Ⅰ. 更生保護의 意義 ····· 6

Ⅱ. 沿　革 ····· 7

Ⅲ. 法的 性質 ····· 11

Ⅳ. 任意的 ·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差異 ····· 13

제 *2* 절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 16

Ⅰ. 更生保護의 理念과 目的 ····· 16

Ⅱ.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 23

1. 矯正處遇의 現實的 限界 ····· 23

2. 社會內處遇制度의 必要性 ····· 24

3.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 25

제 *3* 절 更生保護와 犯罪豫防 ····· 26

Ⅰ. 出所者의 環境과 社會支持網 ····· 26

Ⅱ. 更生保護와 犯罪豫防의 關聯性 ····· 27

제 3 장 美國 · 日本과 우리나라의 更生保護制度 ····· 32

제 1 절 美國 ·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 32

Ⅰ. 美國의 更生保護制度 ····· 32

1. 受刑者의 社會復歸 ····· 32

2. 受刑者에 대한 職業敎育 ····· 41

3. 有權的 更生保護制度 ····· 48

4. 任意的 更生保護制度 ····· 50

5. Halfway House ····· 50

Ⅱ.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 52

1. 沿 革 ····· 52

2. 社會內處遇 ····· 53

3. 更生保護機關 ····· 55

4. 更生保護法의 制定 ····· 58

제 2 절 우리나라의 更生保護制度 ····· 59

Ⅰ. 更生保護機關 ····· 59

Ⅱ. 更生保護對象者 및 保護節次 ····· 61

1. 更生保護對象者 ····· 61

2. 保護節次 ····· 61

Ⅲ. 更生保護의 方法 ····· 62

1. 宿食提供 ····· 62

2. 保護實施 ····· 64

제 4 장 犯罪者의 更生保護現況 ····· 66

제 1 절 收容機關의 更生保護 ····· 66

Ⅰ. 職業敎育을 통한 支援 ····· 66
1. 受刑者 說問調査 結果 分析 ····· 66
2. 職業敎育과 그 成果 ····· 74
Ⅱ. 情神敎育을 통한 支援 ····· 83
1. 敎誨活動 프로그램 ····· 83
2. 社會關係 回復프로그램 ····· 84
제 *2* 절 更生機關의 保護 ····· 86
Ⅰ. 更生機關 ····· 87
1. 公團의 經營革新 ····· 87
2. 組織 改編 ····· 87
Ⅱ. 公團의 更生保護 現況 ····· 88
1. 更生保護事業 現況 ····· 88
2. 生活館 擴充 및 現代化 ····· 89
3. 就業斡旋 機能의 擴大· 强化 ····· 90
제 *5* 장 更生保護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91
제 *1* 절 任意的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91
Ⅰ. 任意的 更生保護制度의 問題点 ····· 91
1. 任意的 更生保護의 趣旨 ····· 91
2. 現行更生保護의 運營實態 ····· 92
II. 有權的 更生保護附 假釋放制의 導入 ····· 98
1. 論議의 背景 ····· 98
2. 現行 假釋放制度의 意義와 運營現況 ····· 102
3.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必要性과 豫想效果 ····· 107
제 *2* 절 更生保護事業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10

I. 關聯法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10
1. 問題點 ····· 110
2. 改善方案 ····· 112
II. 更生保護公團 運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16
1. 問題點 ····· 116
2. 改善方案 ····· 118

제 *3* 절 職業敎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22

I. 職業敎育의 問題點 ····· 122
1. 現代的 職業과 맞지 않는 職業敎育 ····· 123
2. 職業訓鍊 네트워크 未構築 ····· 123
3. 就業斡旋 프로그램 ····· 123
II. 改善方案 ····· 124
1. 適性과 時代에 맞는 職業敎育 ····· 124
2. 職業敎育 네트워크 構築 ····· 126
3. 職業訓鍊 및 就業斡旋 프로그램의 强化 ····· 133

제 *6* 장 結 論 ····· 135

參考文獻 ····· 140

表目次

[표2 - 1] ·····24
[표2 - 2] ·····28
[표3 - 1] ·····54
[표3 - 2] ·····54
[표3 - 3] ·····57
[표3 - 4] ·····63
[표4 - 1] ·····66
[표4 - 2] ·····67
[표4 - 3] ·····68
[표4 - 4] ·····68
[표4 - 5] ·····69
[표4 - 6] ·····69
[표4 - 7] ·····70
[표4 - 8] ·····71
[표4 - 9] ·····71
[표4 -10] ·····72
[표4 -11] ·····72
[표4 -12] ·····73
[표4 -13] ·····75
[표4 -14] ·····76
[표4 -15] ·····78
[표4 -16] ·····79
[표4 -17] ·····80
[표4 -18] ·····80
[표4 -19] ·····82
[표4 -20] ·····84
[표4 -21] ·····88

[표5 - 1] ·····93
[표5 - 2] ·····95
[표5 - 3] ·····96
[표5 - 4] ·····96
[표5 - 5] ·····97
[표5 - 6] ·····97
[표5 - 7] ·····98
[표5 - 8] ·····98
[표5 - 9] ·····107
[표5 -10] ·····125

Abstract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ystem

-Focus on the Compulsory After Care System-

Moon, Il-Seob

Advisor : Prof. Moon, Jeong-Min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a high-tech industry society and conspicuous trend toward two generation family system,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breakdown of public morals and the values relevant to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addition, crime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However, we are facing its side-effects and an expansion of discontent of the underprivileged.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Moreover,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mmit a second offens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Recently, the study on the repetition of an offense and their rehabilitation have been conducted. The vicious circle of crime proves that correction and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for released prisoners may be ineffective. And Our Correction System realize the limitations of cure prisoner of a crime habit.

Therefore the recent trends for prevention of re-offending is going from the institutional detention to community treatmen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the probation system. The national prob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eleased prisoners. It is natural that the rehabilit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of criminal policy and a special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in crime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settled down as the most traditional social protection step of community treatment.

Also, Second chapter explain at length of the rehabilitation's theory and rehabilitation system.

Third chapter compared the USA and Japan's rehabilitation system with our country rehabilitation system

Fourth chapter to start with, I would be interested in knowing where each of our rehabilitation of Correction System and Rehabilitation System

Fifth chapter is an accurate grasp of the problems of Korean rehabilitation system and parole system.

Sixth chapter reach a conclusion as fol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reation of sound social climate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onviction by released prisoners and seeking for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order to give effective supports to them. Also,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ion of re-offending and rehabilitation system in details, an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rehabilitation for released prisoners. Also, to find a way to revitalize rehabilitation system by analyzing critically the directions and program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ies. More over, the welfare enhancement of discharged prisoners should be an important part in social welfare, criminal policy and correction services because it has great benefits for both discharged prisoners themselves and society. And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s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make best use of community resources and to manage th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effectively in our nation.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硏究의 目的

오늘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인 Ferri가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일정량의 범죄가 있다면서 범죄포화의 법칙(Low of Criminal Saturation)[1]을 주장하였듯이 범죄는 인류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다. 다시 말하면 범죄는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류사회와 그 괘를 같이해 왔다 할 것이며, 근래의 범죄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의 범죄통계가 보여 주듯이 많은 범죄가 재범자나 누범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을 볼 때 범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재범에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3]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 물론 재범이나 누범을 비롯한 범죄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의 실패에서만 찾을 수는 없지만,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문제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이기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1) E. Ferri, Criminal Sociology : New Horizons in Criminal Law, 1880, 유기용, 수형자 사회처우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면에서 재인용

2)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2版)」, 第4卷, 青林出版社, 1999, 372頁.

3) 교정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인의 범죄성향을 바로잡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보다 엄한 통제의 성격을 띤다.

4)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분포를 보면, 1996년에는 재범 및 누범자(입소유경력자)는 전체수용자 중 57.2%, 1997년: 55.8%, 1998년: 56.4%, 1999년: 50.8%, 2000년: 54.2%, 2001년에 54.5%, 2002년: 55.4%, 2003년: 56.6%, 2004년 53.4%, 2005년: 52.6%로 수용자 중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한 자의 수는 1999년이 19,044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1회 입소경력이 있는 자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4회 이상 입소경력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에는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한자가 15,630명으로서 2004년에 비해 973명이 감소하였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276면 참조).

따라서 인류는 범죄예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모든 인간교육은 일면 범죄예방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과 막대한 비용투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는 연소화, 집단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의 상당 부분이 전과자에 의한 재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형사범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보면 교정시설내의 처우만으로는 한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자의 개선을 위한 교정교화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5] 이것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악성감염, 교정교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등 교정행정의 비효율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의 전과자에 대한 냉대와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수형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장래의 우리 이웃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흉악범이나 사회악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해야 할 대상으로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교정시설에도 범죄인에 대한 교화개선보다는 통제위주의 처우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낙후성과 교정이념의 빈곤 및 교정행정의 밀행주의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된 채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수형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수형자 수는 2005년말 기준 32,969명으로 이들 수형자 중 52.6%가 1회 이상의 교정시설에 입소하였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출소 후 사회로의 통합성이 낮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생 이상 교육경력이 전체 수용자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력이 31.8%, 초등학교 학력이 11%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결여된 수형자들은 상대

5) 이수성, “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세미나(1989), 37면.

적으로 재입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이후 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 또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수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들은 과거의 범죄행위로 돌아가 심각한 경제 ·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재범의 방지는 형벌, 형을 집행한 후에 갱생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6)]

범죄로 인하여 높아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형자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나 과정개발은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형시설을 늘려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것과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이 교정시설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보다 2배 이상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수형시설내의 직업훈련은 다양한 수준의 학과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과 더불어 훈련 참가자들의 기술습득과 인성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원활한 사회복귀와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가석방을 통한 유권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이러한 유권적 갱생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교정기관과 갱생보호기관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Frédéric Desportes et Francis Le Gunehec, Droit Pénal Gënéral 11e éd., Economica, 2004, pp. 850-851.

7) UCLA School of Public Policy와 미국 교육성이 공동으로 실시한 Correctional Education as a Crime Control Program의 연구결과이다 (http://www.sppsr . u c l a . e d u / dept.cfm?d=ps&s=home&f=psintrohome.cfm)

최근 범죄의 특징은 피해의 규모가 과거와는 달리 월등히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범죄가 과거에 비하여 전문화 · 지능화 · 흉포화 · 저연령화 · 집단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통계측정이 가능하며 범죄백서 등에 기술되어 있으나 강력범죄 등은 그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통계가 없어 사건 수의 증감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의 50%이상이 재범자인 전과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에서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처우인 갱생보호는 어떤 교정처우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석방되어 나오는 출소자 중에는 다른 사람의 원조가 없이는 의식주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일반사회인과의 적응에 실패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예를 들면 귀휴, 외부통근,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중간교도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내처우제도, 즉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장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1장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중인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중 사회사업적 · 사회복지적 개념이 가미된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와 필요적 갱생보호제도를 상호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갱생보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갱생보호의 개념 등을 정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갱생보호제도와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일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임의적 갱생보호를 필요적 갱생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교정시설과 갱생보호시설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헌조사 방법으로 수형자의 갱생을 위한 지원 실태와 수형자 처우의 합리화·과학화 등을 유권적 갱생보호제도의 활용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을 조사하고 또한 관련 학회 등에서 발행되는 연구지에 소개된 연구논문 및 외국문헌을 주된 연구자료로 삼아 이를 심층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갱생보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현재 수용시설 또는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의 도출과 그 대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 2 장 更生保護制度의 一般的 考察

제 1 절 更生保護의 槪念

Ⅰ. 更生保護의 意義

갱생보호란 범죄자 교정의 최종단계로서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원조를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을 말한다.[8] 즉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출소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정시설과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다.[9]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10]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하고 있으므로 석방자보호라고 부르기도 한다.[11]

이는 법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유권적 갱생보호(Compulsory After-care)와 임의적 갱생보호(Voluntary After-care)로 나눌 수 있고, 유권적 갱생보호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유예기간 동안(Probation), 혹은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 가퇴원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가석방, 가퇴원 기간동안(Parole) 국가기관에 의해 원조 · 지도 · 감독을 받

---

8) 이정수·신의기·김효정,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9면; 이태언,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18집, 1998, 252-253면.

9)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교정연구」, 제23호, 2004, 195면.

10) 小長井 賀與, “犯罪者の社會的包攝と諸機關連携”, 「 罪と罰」, 日本刑事政策研究會, 44卷 2号 2007. 3. 6-15頁.

11)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529면.

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는 일반적으로 만기출소자나 기소유예자 등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그 법적 의무를 다 마친 형벌권 밖에 있는 범죄경력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비권력적, 비유권적인 제도(After-care for Discharged Prisoners)를 말한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갱생보호는 범죄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시행해온 시설내처우도 갱생보호를 실패한다면 모두 허사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12] 이처럼 갱생보호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대책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범죄대책을 마무리 짓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며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13]

이미 UN에서도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즉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는 갱생보호(After-care)문제를 논의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다"라고 천명하면서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Bri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4]

Ⅱ. 沿 革

갱생보호제도는 자연법사상, 계몽주의, 신파 형벌이론 및 기독교적 박애사상의 영향하에서 18세기 말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기구로부터 발달한 경우와 국가기구 중심으로 발달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민간의 출소자 보호사업에서 발달하여 국가의

12) 이윤호, 「교정학개론(개정판)」, 박영사, 2002, 419면.
13) 박재윤, “범죄대책의 올바른 방향”, 「갱생보호」, 제1권, 1996, 9면.
14) 이정수 · 신의기 · 김효정,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20면

제도로 채용된 경우가 많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가의 주도 하에 발달하였다.

민간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보호활동은 일찍이 미국에서 민간인의 자발적 보호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민간독지가에 대한 개별적 보호활동은 일찍이 시작되어 왔었다.[15] 그러나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필라델피아주에서 나타났다. 즉 1776년 설립된 "불행한 재소자를 돕기 위한 필라델피아 협회(Philadelphia Society for Assisting Distressed Prisoners)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위스터(Richard Wister)가 민간보호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그는 교도소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출소자가 석방된 날로부터 의식주의 해결이 곤란하고 사회의 냉대와 질병과 공포 속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는 출소자의 비참한 사정을 매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동정하여 협회를 결성 출소자 보호사업을 하여 왔다.[16] 이 협회의 활동은 영국군의 점령으로 2년 후 중지되었다.

그 후 1787년 교도소의 열악한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협회(Philadelphia Society for Alleviating the Miseries of Public Prisoners)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여 계속적으로 교도소 개량과 출소자 보호사업을 하여 왔으며 지금은 "필라델피아 교도소 협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어 보스톤(1825년), 뉴우저어지(1833년), 뉴욕(1846년)등에서 잇달아 출소자 보호운동이 일어나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코네티컷트 교도소 협회", "메사츄세츠 교도소 협회", "위스콘신 봉사협회", "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유태인 봉사회", "뉴욕시 오스본협회" 등의 많은 단체가 활약하고 있었다.[17]

한편 영국에서는 1862년 갱생보호법(Discharged Prisoner Aid Act)을 제정하였으며 보호관찰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887년의 초범자법(First Offenders Act)을 거쳐 1907년에는 범죄자 보호관찰법(Probation

---

15) Edwin H. Sutherland & Donald R. Cress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ition Lippincott Co., 1966, p. 4235.

16) 유인학, "한국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양논문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8집, 1974, 219면.

17) R. Cavan, *Criminology,* 3rd edition, 1965, pp. 562~563.

of Offenders Act)에 의하여 Proba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36년에는 전국 석방수형자원호협회가 창설되어서 석방되기 며칠 전의 수형자가 원호단체의 조사를 받은 후 희망에 따라 최종 조치를 받게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갱생보호는 민간의 주도 하에 주로 Probation이나 Parole의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18]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갱생보호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17세기부터 출소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독일은 1689년 부란텐부르크에 부랑자・전과자・걸인 등을 수용하여 노동력을 이용하는 국영 방직공장을 설치하였고, 1788년 프로이센에서는 출소 3개월 전에 출소자의 귀주예정지로 조사관을 보내어 귀주지에 있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을 통하여 출소자들에게 노동을 시키도록 하였다. 1826년에는 교도소협회가 1827년에는 수형자 개선을 위한 협회가 설립되어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11년의 형법개정에서는 보안관찰(Sicherung –saufsicht)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다.

국제회의의 효시는 184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교도소회의에서 형벌제도의 개혁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870년 미국교도소협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는 신시내티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서 개선 이외에도 취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이어 1872년 6월에는 런던에서 국제교도소회의(후에 국제 형법 및 형무회의로 개칭)가 설립되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대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출소자에 대한 원조는 교도소에 수용중일 때부터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민간단체 지원의 필요성 등이 강조 되었다. 1950년 제12회 헤이그회의 후 국제연합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고, 국제연합도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석방자 처우 및 사후 보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특히 1960년 제2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갱생

18) C. Lchute & B. Marjorie *Crime, Courts and Probation*, The Macmillan Co.,1966, p. 84.

보호문제를 논의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이다”라고 천명하였다.[19]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어, 각 교도소의 장을 대표로 추대하고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록에 의하여 처음 나타나고 있다.[20] 그 당시의 갱생보호사업은 면수보호(免囚保護)라고 불렀으며, 단체명도 면수보호회 또는 보호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에도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한 면수보호활동은 자선적인 구호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다가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호)과 동 보호위원령(칙령 제93호)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갱생보호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 명령에 의하여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재단법인체의 형태로 숙식제공 및 일시보호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법보호회, 관찰보호를 담당하는 사법보호위원회 및 사업지원기관인 사법보호조성회가 설치되어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보호회 등의 기관은 해산되고 이들 기관의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는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다.

1964년 9월2일 국제갱생보호협회(International Prisoner's Aid Asso-ciation)에 가입하였고 1981년 1월9일에는 법무부 직제가 개편되어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종래 교정국산하인 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던 갱생보호업무가 보호국산하로 이관되면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83년에는 유권적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시범실시 지침을 마련하였고 1984년에는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실시 지침을 제정하여

19) 허주욱,「교정학 」, 법문사. 2002, 87면.
2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개정판)」, 1999, 533면.

갱생보호회에서 유권적으로 보호관찰을 시범 실시하여 성공을 한 후 그 시범 실시 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법에서는 우선 소년범에 대하여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소년범의 가퇴원 및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을 붙이도록 하였고, 1989년 3월 25일 개정된 사회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상의 가출소자에게도 제한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그 이후 성인범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의 제정으로 성인 성폭력자가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된 경우, 가석방된 경우에 1994년 4월 1일부터 유권적 보호관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후 종전의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실시되는 도중 1995년 12월29일 형법개정(법률 제5057호)에 의해 성인범에 대해서도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범 전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마침내 1997년 1월 5일 전면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1월 5일에는 그 사이 몇 차례 개정되었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1]

또한 1993년 12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관찰의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는 성인에까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Ⅲ. 法的 性質

광의의 갱생보호는 교도소ㆍ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이 면제되어 출소한 자에 대해 임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환경을 조정하고 갱생자립을 돕는 정신적, 물질적 원조활동 뿐만 아니라

21)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상게서, 535면.

가석방 된 자,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공소제기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이나 퇴원 및 가퇴원을 받은 자,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어 출소 및 치료 위탁된 자들에 대한 강제적 사후감독 활동, 즉 보호관찰을 포괄하는 개념[22]이며, 협의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형벌권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임의적 차원의 정신적 · 물질적 사후보호활동(After-care)만을 가리킨다. 여기서 광의의 갱생보호는 널리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활동과 정책을 의미하며, 가석방, 보호관찰, 사면 등이 포함된 시설외의 비구금처우, 즉 사회내처우와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는 범죄자처우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사업적 ·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주로 형벌의 집행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본인이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갱생보호제도가 전과자들의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행형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준사법적제도라 하겠다.[23]

이에 반하여 유권적 갱생보호(Compulsory After-care)는 범죄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나 신청에 관계없이 국가가 그 고유의 형벌권과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범죄자에게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지도 · 감독 또는 원호에 나서는 것을 말하며,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Probation) 또는 가석방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Parole)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 · 격리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가정, 학교,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위원의 지도(Supervision)나 원호(Assistance)를 받게 하여 그들의 범죄성이나 비행

---

22) 小長井 賀與, “更生保護における修復的司法の可能性—和解プログラムに關するビデオ調査の結果を踏まえて”, 「更生保護と犯罪予防」, 日本更生保護協會, 141号, 2003. 10. 24-52頁.

23) 이정수 · 신의기 · 김효정, 전게 논문, 22면; 김하영, 전게 논문, 20면

성을 교정, 개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형사정책 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법적성격은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적 갱생보호라 함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대응수단으로서 단순한 복지행정의 제도가 아니고 형사사법제도란 점에서는 이론상 논란은 없으나 형사사법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성질에 관하여는 자유형의 변형으로 보는 자유형의 변형설, 형벌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처분설, 형법상 하나의 제재 수단으로 보는 형법상 제재설 등으로 대립되어 있다.[24]

그렇지만 현행의 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등으로 살펴볼 때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법적 효과로서 형을 적용 또는 집행할 수 있으나, 그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내에서 유예기간 중 국가기관 등에 의해 원조 · 지도 · 감독 등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고유예제도와 결부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집행유예제도와 결부되어 각각 발달하였으나 양자가 병용되고 있는 경향이다.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란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교정처우를 받고 있던 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허가하여 사회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원조 · 지도 · 감독 등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처우에는 가석방에 감독과 보호를 부가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감독적 기능이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적극적 처우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25]

Ⅳ. 任意的 ·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差異

강제적 갱생보호와 임의적 갱생보호는 국가권력의 관여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두 개념의 구체적 차이점으로서는

24)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 1991, 170면,
25) Todd R. Clear & George F. Cole, American Corrections(2nd eds.), Cole Publishing Co., 1990, p. 100.

첫째, 대상자측면에서 강제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 집행유예 등의 관련 판결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 가퇴원처분을 받는 등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같은 처분결정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되는 반면 임의적 갱생보호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석방된 범죄자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실시측면에서 보호관찰은 대상범죄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그 동태를 감독과 지도에 나서는 반면 갱생보호의 경우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이다. 따라서 강제적 갱생보호의 보호관찰대상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등 보호관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경우에는 구인 · 유치 등으로 구속되거나 집해유예취소 · 선고유예실효 · 가석방취소등으로 다시 구금되는 등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으나 임의적 갱생보호의 갱생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호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에 대하여 실시기관은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이념적 제도측면에서 갱생보호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사업적 · 사회복지적 색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대응수단으로서 단순한 복지행정 차원의 제도가 아니고 국가형사사법제도의 일부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 자유형의 변형이든 보안처분이든 또는 제3의 형벌제도로 파악 되든 간에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 감독과 처벌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적 요소와 사회방위 이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갱생보호와 강제적 갱생보호는 언제나 자로 잰 듯이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사회내처우제도의 축을 이루고 있어 서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 상호간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에 있어 상당히 중복적이라는 점인데 보호관찰대상자는 동시

에 모두 갱생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보호관찰의 실시는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과 원호구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원호나 구호는 어느 정도 유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의적 갱생보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셋째, 이념상의 상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도·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의적 갱생보호 역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와 사회와의 거리와 격차를 줄여주고 보다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내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단순한 사회사업의 분야라고만 할 수 없다.

넷째, 보호관찰은 형벌대체적 성격과 함께 처벌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실시과정에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건전한 생활에 대한 유권적 지도의 요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집행과정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수단이 보충적 장치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호관찰의 형벌대체적 성격과 사회방위적 기능을 염두에 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그 실시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태도, 직업,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별적 특성에 관계없이 언제나 무차별적으로 재범차단을 위한 감시적 기법만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관은 평소 대상자 지도과정에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부터 예측되는 재범위험성을 분석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의 수준과 강도를 달리하면서도 현장에서의 대상자 관리기법으로서는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인간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심리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병행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사업적 지도기법을 일반적으로 병용한다. 예컨대 그 실시과정에 있어서 인도주의와 사회사업적 방법은 갱생보호에서와 같이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Ⅰ. 更生保護의 理念과 目的

사회복지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수단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국민간의 현실적인 생활면에서 차이가 많은 데가 국가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사회복지적 배려없이는 최저한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즉 그들이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형태든 후원의 형태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는 많은 일반사람들이 불우노인, 버려진 아동,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여러 대상 중의 하나인 범죄인에 대한 관심은 그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회의 주도적 계층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다. 때문에 그들의 인권의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나 잠정적인 피해자들의 아량과 자신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일반인들의 개인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범죄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6] 이는 사회에 위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7]

---

26) 홍봉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212면.

갱생보호의 이념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석방되어 나오는 출소자 중에는 다른 사람의 원조 없이는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고 사회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베푸는 일은 분명히 인도주의의 필연인 것이다. 아무리 응보형론에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형벌의 집행이 인과응보의 논리적 필연임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하려는 출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적절한 갱생보호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구제하고 보호하려는 인간애, 즉 휴머니즘의 필연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28]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갱생지원은 이재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되고, 형사정책적인 배려와 공동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29] 즉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인간의 균등한 기회,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속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worth and dignity of individual)은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극존의 존재이며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원리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활용되는 중요한 원리로서 각자의 자기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인간의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는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물질, 교육, 지위, 신앙, 인종, 직업, 거주지 및 기타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지기도 하는데 사회복지란 측면에서는 이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똑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할 도덕적, 직업적 원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인간의

---

27) 최인섭,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1-73면.
28) 김기두, “갱생보호의 이념과 실천”, 「법학」, 통권 17호, 1971, 6면.
29) 상게서, 6-7면.

고통이나 괴로움은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서든, 혹은 환경에의 부적응으로 인하여서든 반드시 개인의 잘못이나 어떤 의지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나 대가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고통을 방치해 두면 고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으로만 존립하기 보다는 그 당사자의 건전한 의지까지도 저해하여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유인하는 무서운 제2차적인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개인의 괴로움에 연대적인 책임, 공동의 과제로 임해야 한다는 가치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를 갱생보호의 이념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인간이란 성별, 지역, 경제적 부의 유무, 직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여부, 전력에 관계없이 인간인 이상 천부적으로 존엄하다는 가치이다. 따라서 비록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은 조금도 훼손될 수 없으며 인간존엄성의 실천적 가치인 행복의 추구가 사회적 장애로 인해 개인적으로 확보하기가 힘들 때는 출소자들도 장애인, 노인 등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래한다. 만약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자신의 생활유형을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30] 교정시설의 범죄자의 경우 법적인 강압에 의해 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축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교정시설에 있었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이나 강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도움을 행하는 쪽에서도 지시나 강요를 거부감없이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은 인간존엄성의 논리적 귀결이며 실천적 가치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원조개입시 상당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인간의 균등한 기회에 대한 가치는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소자는 사회지체(community lag), 심리적 지체(psychological lag)로 인해 사회적응상의 큰 어려움을 겪는다.[31] 오

30) 장중탁,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이념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66면.

랜 기간 동안 사회와의 격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때문에 재활을 위한 노력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과거의 전력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현재의 상황에서 인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활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재활의 기회가 되기에 역부족인 사람들에게는 국가 및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는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갱생보호의 이념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의 특별예방적 치료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다. 범죄는 당사자 개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기체적 사회의 부산물이라는 범죄의 사회성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원인 제공에 있어서 아무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죄의 대가를 치룬 출소자들의 갱생을 국가,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의 목적에 우선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출소자의 복지증진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갱생보호의 이념은 결론적으로 우선 범죄로부터 사회의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관점과 범죄자들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자립갱생, 즉 재활(rehabilitation)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갱생보호이념의 실천은 재범으로부터 출소자들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여 전체 사회복지의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범죄자를 파악할 때, 개인과 환경 모두는 특정 상황 속에서 양자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관찰되고 파악되어야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성은 인간과 그 주변 환경이 동일 생태체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해 가는 가운데 공동의 운명을 형성해 감을 의미한다.[32]

---

31) 이정수 · 신의기 · 김효정, 전게논문, 19면.

32) Carel B. Germain & Alex. Gitterman,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5.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경우 범죄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적절한 행동규범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지지망(social networks)은 가치와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며 계속적인 지지, 경계(vigilance), 일관성(consistency)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고히 한다. 가족, 조직, 치료적 공동체 등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회지지망의 영향은 매우 크다. 더욱이 범죄자에 대한 사회지지망의 중요성은 더 더욱 크다.

최근 범죄자의 가족과 자녀, 지역사회 간에 사회지지망을 통한 체계적인 개입들이 재활의 대안으로 교정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자연적 사회지지체계(natural support system)의 개입은 가족 체계내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지지적이다. 이들 사회지지망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지지하는 종합적인 조직망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이들 지지의 사용은 재범률을 낮추고 세대간 범죄발생을 막고 세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33]

사회지지란 개념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사정과 개입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회지지의 존재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 위기동안 개인을 보호하도록 돕고 질병, 실업 또 다른 상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데 유용하다. 특히 청소년사법분야 내에서 지지의 존재는 퇴소시 청소년의 상황이나 치료시 문제의 심각성보다 더 나은 결과의 예측요인이 된다.[34] 뿐만 아니라 사회지지라는 틀은 성인형사사법체계의 경우에도, 범죄자의 출소 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출소자와 가족을 도울 때 교도소시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35]

또한 이러한 준거틀은 사회지지가 범죄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구금과 전환

---

33) C. Hairston,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Do they influence future criminal activity?", *Federal Probation*, Vol., 52, 1988, pp. 48-53.

34) J. Whittaker & S. Schinke & L. Gilchrest, "The ecological paradigm in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1986, pp. 483-484.

35) G. Hannon, D. Martin, & M. Martin, "Incarceration in the family: Adjustment to change", *Family Therapy,* Vol., 11, 1984, pp. 253-269.

기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제시한다. 덧붙여 사회지지는 돈이나 옷,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를 도울 수 있다.[36] 게다가 사회지지는 범죄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기의 생활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사회지지망의 결여는 출소 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지지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범죄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에서 적절한 행동을 찾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지지와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지지는 건강한 인간발달을 조장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가족을 보호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였다.[37] 또한 실제 억제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의 증가를 보이는데 반해 대인기술, 상담제공 등의 프로그램, 다차원적 서비스프로그램, 인지적 사고패턴과 태도변화를 초래하는 개입들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출소자의 출소 후의 사회적 재적응은 출소자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결코 일정한 고정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소자가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39]

첫째,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이다. 출소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

---

36) Homer, "Inmate-family ties: Desirable but difficult", *Federal Probation*, Vol., 43, pp. 47-52.

37) Francis T. Cullen, John P. Wright & Mitchell B. Chamlin,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 Delinquency*, Vol., 45 No., 2, 1999, pp. 188-194.

38) D. A. Andrew & J. Bonda,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Anderson, 1998,

39) 정진연, “갱생보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호, 1995, 204-205면;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8, 731-732면; 김수길,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법과 정책」, 제2호, 1996, 62-65면.

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더욱 심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반작용에 의한 좌절이다. 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불신과 냉대는 그들의 활동을 위축 받게 하여 그 결과 전과자만의 비행적 하위문화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재범을 하게 되면 전과자라는 사회의 각인화는 더욱 가중되고 깊이 빠져들어 가게 되어 설령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하려는 출소자의 의욕을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의 거부반응은 크게 작용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날이 거듭 될수록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출소자의 심리적 갈등이다. 출소자들은 흔히 스스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회의 이단자 또는 낙오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심리적 지체(Psychological Lag)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질적 원조 이외에도 심리지도가 필요하게 된다.

넷째, 출소 후 생계유지와 주변의 유혹이다. 출소 후 생계유지가 막역하게 되면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황하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 경우 원호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 그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재범의 유혹에 빠지게도 된다. 그리고 출소자들의 주변에는 과거의 비행동료나 교정시설의 동료들이 모여들어 유혹의 손길이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출소자 자신의 갱생하려는 의지와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출소자들을 사회성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반사회인들의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40]

즉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적 특질은 물론 그들이 돌아갈 환경 즉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 직장, 기술, 종교, 경제적 상황, 나아가 마약, 술 등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출소자의 재사회화 과정에서는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환경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출소자의 개인적 결심과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서 제도적·비제도적 혹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없이는 사회적 재적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내용은 출소자가 사회에서 부딪치는 개인

40) 유병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갱생보호」, 제21호, 2001, 5면.

적,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직업으로서의 성장을 원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하여 개인적 자활은 물론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신적 지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사회사업실천 기술과 상담 등의 전문적 방법 및 기술을 출소자와 그들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적 차원에 개입시켜 그들의 낮은 자아정체감과 적응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가족, 이웃,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들의 일탈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의 차단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위하여 제도적, 비제도적 지지체계와 함께 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Ⅱ.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1. 矯正處遇의 現實的 限界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정기관이 수형인을 사회로 내보낼 때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상태로 내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만들어 보내느냐는 교정교화의 성공여부와도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의 현실은 첫째 범죄자에 대한 시설중심 처우로 인한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41] 범죄자들이 열악한 수용시설에 구금됨으로써 겪는 체험은 이들의 재사회화에 결코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교정시설의 운영은 결국 비경제적이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경쟁력을 잃게 된

41) 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면.

다. 둘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개별적 행형처우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행 행형처우는 수형자의 수용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은 수동적·정태적이며 일시적·즉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처우상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며, 관련기구 및 관련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어렵고 교정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자의 재활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예측이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도 비판대상이다. 셋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에 비해 실제 교정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교정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어 가면서 교정조직과 교정정책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조정되고 개발·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42]

2. 社會內處遇制度의 必要性

사회내처우제도(Community-based Treatment)는 시설내처우(Institutional based Treatment)가 가지는 비효율성, 비경제성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복귀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43] 다시 말하면 시설내에서의 사회적응훈련은 외부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44] 따라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의 사회에로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45] 즉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거나 재형성하고 범죄자를 지역사회생활로 통합 혹은 재통합시키며 가족간의 유대를 재정립하는 등 직업과 교육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정상적 기

---

42) 조기룡, “재통합모델에 기초한 교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3-4면.
43) 立岩眞也, “監視と處罰：監獄の誕生”, 「社會心理學評論 6」, 新潮社, 1987, 91-108頁; http://www.arsvi.com/0e/c0193.htm
44) 이정수·신의기·김효정, 전게 논문, 4면.
45) 北澤信次, 「犯罪者處遇の展開一保護觀察を焦点として」, 成文堂, 2003, 235頁.

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복귀이념에서 거의 중심적인 초점이었던 개별범죄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제도의 변화와 동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46]

3.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

1차적 범죄행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 있으나 2차적 범죄 행위는 낙인이론에 따라 전과자라는 사회의 낙인화에 따라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47] 그러므로 일정기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하게 적응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출소 후 2~3개월 사이에 유혹과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흔히 누범부란기간이라고 한다.[48]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교도소 출소자들은 아무리 재범을 범하지 않을 각오로 각오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서는 그를 전과자로 낙인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새출발하려는 출소자에 대하여 사회가 그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이웃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사회지체(Community Lag)라고 한다.[49] 둘째, 교도소 출소자들은 흔히 스스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회의 이단자 또는 낙오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심리지체(Psychological Lag)라고 한다. 셋째 출소자들의 주변에는 과거의 비행동료나 교정시설의 동료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제거하여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인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군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친화성을 느끼어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

---

46) 장중탁,“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사회복귀이념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면.
47) Thomas J. Bernard・Jeffrey B. Snipes, *Theoretical Criminology*,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220.
48) 신진규,「범죄학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7, 733면.
49)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529면.

랑과 이해로 대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도소 이외에 사회내처우로써 갱생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였다가 석방시킨 후 사회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방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는 범죄를 양성하고 배양하는 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50]

따라서 출소자를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갱생시키는 사업은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재범의 방지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51]

제 3 절 更生保護와 犯罪豫防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관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생물학적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심리학적 관점만의 주장도 크게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이 사회학적 관점으로 현대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으나 많은 사회학적 관점의 이론들도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이론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작금에 있어서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인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가장 범죄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아지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아개념이론을 들 수 있다.[52]

Ⅰ. 出所者의 環境과 社會支持網

범죄원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은 그 대책이 너무 추상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그에 대책으로 등장한 사회·심리학

---

50) 吉野智, “再犯防止はスクラムを組んで-英國における犯罪者處遇のパートナーツップ-”, 「刑政」, 17巻11号, 2006. 11., 51頁.
51)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전게서, 530면.
52)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1, 220-231면.

적 관점은 범죄인 교정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즉 사회심리학적 이론인 자아개념이론은 자아개념의 형성을 개인적, 환경적 과정의 결합으로 간주하며 범죄의 원인을 낮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에서 찾기 때문에 그 대응책은 범죄자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53]

이처럼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자아개념으로 보게 되면, 범죄인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한 정신적 지지와 환경개입 및 취업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재범의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갱생보호의 궁극적 목표는 출소자의 복지증진과 재범으로부터의 사회보호이며 그것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재사회화를 이룩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사실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개념은 교정론적 시각에서는 교도소 생활 그 자체를 재사회화 과정으로 보는 반면, 낙인이론을 위시하여 행형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출소 이후에 교도소와 같은 처벌기관이 아닌 기타 복지기관에 의해서 재사회화 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Ⅱ. 更生保護와 犯罪豫防의 關聯性

출소자의 재범은 본인의 인격을 또 다시 파탄시키고 가족에게 재차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복지를 스스로 파탄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재범은 사회적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출소자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위한 그들의 사회적 재사회화는 재범방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년 동안 수형자의 재범율을 살펴보면 2000년 6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50.%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초범의 경우는 2000년도에 39%이던 것이 2005년에는 49.2%까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53) 홍봉선,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청소년」, 제13집, 1997, 57면.

전체 수형자 중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50%를 육박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범죄통계는 숨은 범죄 혹은 미검거 범죄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절대적 수치는 상승할 것이고 초범에 비해서 재범의 검거율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을 고려하면 재범의 비율도 공식적 통계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 연방통계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40%의 출소자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것이라는 추정보다 높은 수치이다.[54]

[표2-1] 수형자 중 초범자 대 재범자 현황[55]

연도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	33,706 (100)	33,335 (100)	32,939 (100)	34,373 (100)	36,811 (100)	38,737 (100)
초범자 (%)	13,148 (39.0)	14,253 (42.8)	14,113 (42.8)	15,205 (44.2)	16,041 (43.6)	19,044 (49.2)
재범자 (%)	20,558 (61.0)	19,082 (57.2)	18,826 (57.2)	19,168 (55.8)	20,770 (56.4)	19,693 (50.8)

우리나라에서의 재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교정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일부 수사와 재판단계의 제도미흡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재범의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수사관행 및 유예제도 활용 미흡, 단기자유형의 폐해문제, 교정시설의 부족과 그로 인한 과밀수용과 인권침해문제, 분류처우의 미흡 등을 거론하고 있다.[56]

또한 누범의 원인으로서 행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의 불충분, 사회적 처우의 미흡, 경제적 요인, 사회적 불신, 사회내처우의 미흡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57]

---

54)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Allyn & Bacon, 2001, p. 342.
5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200면.
56) 김기현, “재범의 원인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9호, 1999, 242-249면.
57) 김수길, “누범방지에 관한 연구”, 「제주논총」, 제주대학교, 제1집, 1993, 68-71면.

재범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불합리한 부분과 특히 교정단계에서의 재소자의 복지증진과 그들의 건강한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함께 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 관련조직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상호교류, 협력체제, 연계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58] 하지만 출소자의 재범은 출소자가 출소 후 갖게 되는 개인적 및 환경적 여건이 재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수사→재판→교정→갱생보호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인의 처우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마다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지마는 재범예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의 단계가 실패하면 그 이전의 모든 단계가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재범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이전의 모든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설혹 재범의 예방을 위한 처우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최종단계인 갱생보호단계에서 과학적,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재범 방지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재범 이상의 경력자 872명 중에서 갱생보호공단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중 16.2%만이 이용해 본 적이 있고 83.8%는 이용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갱생보호제도가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22.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가 전체의 40%로 나타나, 갱생보호공단을 이용해 본 사람의 62.4%가 갱생보호공단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59]

이는 조사대상자가 재범 이상의 죄를 짓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모든 영역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재범이상의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갱생보호공단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

58) 신상철, “수형자 사회복귀의 효율적 발전방향”, 「교정문집」, 제1집, 2000, 577면.
59) 박철현,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9면.

중 62.4%는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또한 그리고 재범자 이상 872명중에서 16.2%가 갱생보호공단을 이용했다는 의미는 비록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중 16.2%는 재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갱생보호공단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법적으로 갱생보호공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약 10%만이 갱생보호공단의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보호 종료후 그 중에서 1년 후에는 23.3%, 2년 후에는 33.6%, 4년 후에는 44.3%가 재범을 일으킨다고 제시하면서 이는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일반 출소자의 재범율 약 51.2%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보고하고 있다.[60]

두 보고서의 연구대상과 방법이 달라 일률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이 두 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아무튼 출소자가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으면 재범을 억제하는데 적지않은 효과가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율도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여 보호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범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호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보호 종료 후의 사후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출소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보호대상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출소자 중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이미 교정의 가능성이 큰 사람이므로 갱생보호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재범율이 낮은 것 전부가 갱생보호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표 2-2] 갱생보호공단 수혜자의 재범현황

60) 예병순, “제1회 전국 갱생보호 전진대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갱생보호공단, 2001, 55면.

구분 연도	숙 식 제 공		선행지도(관찰보호)		계	
	종 료	재 범	종 료	재 범	종 료	재 범
2000	1,592	1(0.1%)	4,518	56(1.2%)	6,110	57(0.9%)
2001	1,646	5(0.3%)	4,621	46(1.0%)	6,267	51(0.8%)
2002	1,651	1(0.1%)	3,219	25(0.8%)	4,870	26(0.5%)
2003	1,683	0	3,112	32(1.0%)	4,795	32(0.7%)
2004	1,647	1(0.1%)	3,584	48(1.3%)	5,231	49(0.9%)
2005	1,723	11(0.6%)	3,781	52(1.4%)	5,504	63(1.1%)

*출처 : 한국갱생보호공단 내부자료. 2006.

그리고 공단이 직접 수집한 통계에 의하면 최고 1년까지의 생활관에 입소하여 숙식과 사회재적응 훈련을 받은 사람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추수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의 보호 중의 재범율이 평균 3%를 넘지 않고 있다

제 3 장 美國 · 日本과 우리나라의 更生保護制度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미국과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제도를 고찰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정책 내지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내 교정처우 또는 비시설적 처우방법인 갱생보호제도 특히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에 대한 Probation제도 및 가석방자에 대한 Parole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교정을 교정·교화의 개별화로 보고, 이러한 개별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직업훈련 과정과 유권적 갱생보호부 가석방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를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와 비교하여 다음 장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 1 절 美國 ·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Ⅰ. 美國의 更生保護制度

미국에서는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가석방된 자에게 대부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형의 만기출소자에 대한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민간인 출소자보호단체가 담당함)가 비중을 잃게 되었다. 즉 보호관찰관이 통일적으로 유권적 갱생보호를 담당함으로써 그 시설규모가 더욱 크게 되고 그 내용과 방법이 더욱 전문화되는 것이다.

1. 受刑者의 社會復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의 처벌장소나 사회문제로 인해 양산되는 부산물들을 처리하고 수용하는 장소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 들어주고 있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교도소가 필요하며 교도소의 존재목적 중의 하나가 처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교정제도는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가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된 것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다시 복귀할 것이므로, 범죄자들이 입소할 때보다는 출소할 때에 보다 향상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귀(rehabilitation)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은 재정적 측면, 사회적 비전, 상식적 측면에서도 부합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론이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 사회복귀이념이 미국사법제도의 원대한 비전속에서 실현된 적은 결코 없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복귀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다. 베넷(Bennett), 디유리오(Diliulio), 그리고 월터스(Walters)는 미국사법제도가 형벌의 첫 번째 목적은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이념 때문에 무력해졌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시대의 절정기에도 사회복귀에의 투자와 개입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주에서는 1967년의 대통령범죄위원회의 기술 그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61]

교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사실은, 비록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교정의 주된 목적이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구금이 목적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구금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는 재소자들의 처우에 있어 창의적인 시도가 전반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범죄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인들이 사회적으로 구차한 문제들을 뒷전으로 감추는 수단으로서 교정제도를 사용하고 오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62]

물론 오늘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구금됨에 따라 이미 축소된 사회복귀적 시도들까지도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제로 많은 주에서는 사회 복귀에 대한 무관심 수준을 넘어서 일부 범죄학자들이 일컫는 '해악적 행형(penal harm)', 즉 응보와 억제라는 미명 아래 재소자들에게 혹독한 고통과 박탈을 부가하는 행형을 실시하고 있다.[63] 주로 말로만 그치는 지원이었지만,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은 범죄자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인다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쇠사슬을 채운 노동과 줄무늬 죄수복 그리고 처벌적이고 모멸적인 재소자 작업 등이 다시 출현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재소자들의 생활을 너무 편하게 만든다는 시각 때문에 교도소내 직업훈련, 교육, 심지어 마약치료

---

61) Elliott Currie,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이백철 옮김, 학지사, 2004, pp. 225-226.

62)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p. 12.

63) Todd R. Clear, Harm in American Penology: Offender, Victims, and their Communit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 Frances T. Gullen, Assessing the Penal Harm Movement,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Vol. 32, No. 3, August 1995.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처럼 범죄자들을 비생산적인 구금생활로부터 혼란스럽고 비친화적인 지역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조치들이 정의와 도덕성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며 자기합리화적 만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귀적 접근방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복귀정책에도 요술지팡이와 같은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재소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복귀가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추상적이고 비생산적인 토론에서 벗어나, "어떤 점이 효과적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64] 지역사회 내 예방프로그램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효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경건하거나 종합적인 접근방식(holistic or comprehensive approach)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재소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전문가들이 범죄생성인자(criminogenic needs)라고 일컫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안고 들어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한다면, 출소한 재소자들이 외부 사회에 나가 다시 실패한다면, 출소한 재소자들이 외부 사회에 나가 다시 실패한다 해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두 가지 사례로 재소자를 위한 마약치료 프로그램과 폭력청소년을 위한 사회재진입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한다.

재소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마약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

64) Alan T. Harland(Ed.), *Choosing Correctional Option that Wor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6. pp. 18-32.

없다. 전문가들은 주립교도소 재소자의 50~60%가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마약문제를 안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치료대상' 의 기준을 아주 낮게 잡는다 해도 현재 실정은 대상의 일부분만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1996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4만 5천 명의 재소자 중 70%가 심각한 마약남용자였으나 전체 교정시설 내에는 400개 침상밖에 갖춰져 있지 않았다(이후 1,200개 침상이 추가되었다.) 일부 주의 상황은 좀 나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대체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물론 모든 마약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어떤 치료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거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재소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 집중적인 주거식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출소 후에도 종합적인 사후처우를 실시한 프로그램이었다. 가장 최근의 성공적 프로그램 사례는 델러웨어대학(the University of Delaware)의 범죄학자 제임스 인시아디(James Inciardi)에 의해 시행된 키 프로그램(the key program)연구라 할 수 있다.

키 프로그램은 주립교도소 내에 독립된 치료시설을 설치하여 12~15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 내 중간 처우시설에서 마약치료와 직업훈련을 포함한 사후처우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키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 결과를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이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비교그룹은 출소 후 18개월 동안에 70%가 다시 체포되었고, 교도소 프로그램에는 참여했지만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은 그룹은 52%가 다시 체포되었으며, 오직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만 참여한 그룹의 경우는 35%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소 후 사후 처우기간이 비록 짧은 데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교도소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그룹의 경우는 오직 29%만이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65]

---

65) James A. Inciardi, *A Corrections-based Continuum of Effective Drug Abuse*

특히 여성재소자들의 경우, 필요에 따른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소자 인구 중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이 구금되는 주된 원인이 마약범죄 혹은 마약사용과 연계된 재산범죄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그 어떤 종류의 마약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더욱 제외되어 있다.[66] 마약을 남용한 여성들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격리시켜 놓은 채 치료의 필요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들의 사회복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습적 폭력소년들에 대한 전통적 대처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1980년 연방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the Federal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지원을 받아 폭력청소년 프로그램(The Violent Juvenile Offender/VJO)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청소년들이 최초 단계에서 왜 범죄에 개입되었는가에 관련된 범죄이론을 철저히 적용하고 그 이론에 따라 소년들을 사회에 재융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가족, 직장, 학교, 모범적인 또래집단과 같이 사회 친화적인 부분들과 문제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일관적이고 개별적이며 집중적인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 재진입(graduated reentry) 시킨다는 점에 있었다. 이는 숙련된 케이스 워커(case worker)에 의해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시설 내 조기출소 훈련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는 교도소 밖 중간처우 시설에서의 사후처우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로의 재진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알선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

Treat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6.

66) Barbara Bloom, Meda Chesney-Lind, & Barbara Owen, *Women in California Prisons; Hidden Victims of the War on Drugs*,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1994, p. 7.; Belknap, Access to Programs and Health Care for Incarcerated Women, p. 36.

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 보스턴(Boston), 디트로이트(Detroit), 멤피스(Memphis), 뉴어크(Newark) 등 4개 도시에서 실시되었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실제상황과 이론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범죄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뉴어크의 경우는 시작단계에서 실패하였지만, 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상습적인 폭력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낮아졌고, 재범한 경우에도 재범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67] 보스턴과 디트로이트에서 프로그램이 성공한 중요 요인은 임금보조 등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취업알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다중적 체계요법(multi-systemic therapy)과 같은 다른 성공적인 프로그램들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즉, 케이스워커들이 직접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관계 전반을 중시하였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듯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적용되지 않았다. 비판자들은 소년사법제도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엄격한 대처 대신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이다. 그러나 전국아동보호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Advocates)의 조사에 의하면, 주립소년사법기관의 예산의 60%가 소년들을 구금하는데 사용되었고, 오직 4%만이 출소후 사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8]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대처는 뚜렷하게 처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마저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컨대 전국

---

67) Jeffrey Fagan, Treatment and Reintergration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Experimental Results, *Justice Quarterly*, Vol. 7, 1990, pp. 233-263; Jeffrey Fagan, & Martin Forst, Risks, Fixers, and Zeal: Implementing Experimental Treatments for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e Prison Journal,* Vol. 76, No. 1, March 1996, pp. 22-59.

68)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Advocates, *Ready, Willing and Able: What the Record Shows about States Investment in Children*, 1990-1995, Washington, D. C., 1996, p. 46.

소년사법시설 중 절반이 구금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규정한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은 준법소년도 받지 못하는 학교교육을 범죄소년에게 제공될 수는 없다는 논리 하에 옹호되고 있다. 이 역시 자가당착적 논리인데,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범죄를 범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모순된 현상은 성인교도소에서 중등 이상 교육프로그램이 급격히 쇠퇴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1994년도의 통계를 보면, 주립교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재소자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펠기금(Pell Grant)을 제외시킨 1994년 연방일괄범죄법안(the 1994 Federal Omnibus Crime Bill)은 이러한 쇠퇴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1백만 명에 가까운 전체 교도소 인구 중에서 중등 이상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주립교도소 재소자의 숫자는 3만 8천명에서 2만 1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절반의 주립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학사학위 프로그램이 다음 해에는 3분의 1로 축소되었다.[69]

물론 우리는 아직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만큼 충분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현존하는 프로그램사례들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복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효과가 없거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오직 극소수의 프로그램만이 범죄자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확실한 이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확실한 이론과 원칙에 근거한 소수의 프로그램들마저도 시행

69) Jessica Portner, Jailed Youths Shortchanged on Education, *Education Week,* Vol. XVI, No. 5, October 1996; Richard Tewksbury, & Jon Marc Taylor, the Consequences of Eliminating Pell Grant Funding for Students in Post-secondary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s, Federal Probation, Vol. 60, No. 3, September 1996, pp. 60-63.

이 극히 미약하거나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결과로서 결국 범죄자를 감방에 구금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s)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중간처벌은 보호관찰과 구금형 사이에 존재하는 형벌로서 병영식 캠프(boot-camp),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및 집중감시보호관찰(inten-sive surveillance) 등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엄격하면서도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평가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병영식 캠프 프로그램은 소년범죄자들을 준군대식 훈련(quasimilitary discipline) 프로그램에 몇 개월 동안 참여시킨 후, 본래의 지역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재범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은 물론 집중감시 프로그램 역시 제한된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 집중감시 프로그램 역시 제한된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 집중감시 프로그램은 범죄자와 가석방 담당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마약복용검사 및 기타 수단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설계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지만, 1990년대 초 랜드사의 평가 결과 재범률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최초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 성공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환상이라는 점이다. 즉 낮은 비용에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은 실제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처벌일 뿐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실패할 경향이 높다 할 수 있다. 프랜시스 컬랜(Francis Cullen), 존 폴 라이트(John Paul Wright), 그리고 브랜돈 애플케이트(Brandon Applegate)는 “감시와 통제만으로는 범죄자의 재범률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고 주장하였다. 즉,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마약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인 마약복용 검사만 강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드문 경우이지만, 중간처벌 프로그램 중에서도 범죄자들의 근원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회복귀 목표를 명백하게 강조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집중감시 보호관찰에 대한 랜드사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들에 대한 감시활동 외에 특정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에는 재범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뉴욕 주의 병영식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재융화를 강조한 경우에는 비록 단기적 효과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70]

끝으로 중요한 점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그들이 돌아갈 지역사회의 여건을 향상시킬 전반적인 전략들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 일자리가 없는데 소년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준법청소년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공적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마약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잘 알려진 대로,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폭력청소년 프로그램(The Biolent Juvenile Offender /VJO)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과 한계를 평가하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생산적인 사회로 재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기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신뢰를 잃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귀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그 반대가 사실이다. 근원적인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재소자들을 시설내 구금에서 황폐한 지역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악순환의 행위는 분명 처벌적 행형정책이다. 물론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를 완화하는 데에는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거나 혹은 시초에 범죄를 유발시킨 요인들을 범죄자 스스

---

70)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Bradon K. alllegate, Control in the Community: The Limits of Reform? in Harland(Ed.), *Choosing Correctional Options*, pp. 69-116.

로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은 아무런 효과도 낳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범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등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복역 그 자체는 범죄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재통합적 접근(reintegrative approach)에서는 재소자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글과 기술 그리고 분노를 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소자와 사회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사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범죄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배우는 데 동의한 것이다.

2. 受刑者에 대한 職業敎育

미국 교정청(Bureau of Prisons)은 1991년 교육성과 공동으로 주정부, 학교, 교정시설의 교정교육 훈련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OCE(Office of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는 이처럼 OCE의 지원을 받아 수형자들이 시장성이 있는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출소 후 고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법무성과 교육성이 공동으로 예산을 출연하여 역량중심의 훈련과정 개발[71], 훈련 효과 측정, 연구계획 및 훈련전문가들의 개발과 훈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하여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71) 여기에서 역량중심의 훈련이란 개인 및 사회수준에서 높은 가치의 성과에 기여하고(contribute to highly valued outcomes at the individual and societal level), 광범위한 상황 하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들이며(are instrumental for meeting important compiles demands and challenges in a wide spectrum of contexts),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능력(are important for all individuals)이다(Lothar Abicht · Henriette Freikamp · Uwe Schumann, Identification of skill needs in nanotechnology, codefop Panorama series, No. 120,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p. 37).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함으로써 교정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72] 이렇게 설립된 NICE는 교정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데, 교정교육 담당자들을 위하여 계절학기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센터에서 최신 교정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다양한 교정시설의 정보와 자원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교정청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의 학교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와 교정청간의 대표적인 협력의 사례는 Middle Georgia Technical College와 주 교정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6개의 주 수형시설에서 실시한 출소 전 직업훈련과정이다. 훈련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며 훈련내용은 취업가능성이 높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직장을 찾는 방법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0년에는 훈련을 이수한 출소자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수형시설 내에서 Middle George Technical College주최로 수형자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NICE의 활동은 수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CEDA Terrific Award in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들에게는 Customer Services and Business Technology분야의 기술자격증도 수여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교정청의 자체 강사진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출소 후 프로젝트(Post Release Employment Project)의 결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과정은 훈련참가자들의 재소 중 또는 출소 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주 교육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훈련교사들도 주 교육감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73] 따라서 메릴랜드

---

72) 미국 법무성에서는 Indidan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예산($400,000)을 지원하여 교정훈련에 관한 국가적 기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교육성에서도 예산($600,000)을 지원하여 NICE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http://www.spa.ucla.edu/ ps/webfiles/con_template.cfm ?display=concen/edu_overview.cfm&conid=edu&cat= overview

73) H. D. Jekins, I, Pendry, & S. Steuer, "A Post-release follow-up of Correctional

주 교육부는 교정교육프로그램 등 수형시설 내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에는 미네소타 주립대학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과 자격증은 North Central Accerdation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도 수형시설내의 직업훈련은 Ohio Central School System을 통하여 3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과정에 대한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74] 켄터키주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교정청에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면 교정청은 캔터키 기술전문학교와 계약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1) 訓練過程 類型 및 運營體系

미국교정협회는 수형 시설내의 교정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17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가능한 모든 수형자에게 종합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철학, 의사소통 기술, 일반교육, 특수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유형과 수준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훈련 수요를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수형시설 내에 공공도서관 수준의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에서도 수형자 교육훈련에 관하여 수형자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염두해 두고 전인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모든 수형자는 가능한 한 정규교육과 직업훈련, 창조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직업훈련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75]

수형자들에 관한 교육은 전 연방교도소와 90% 정도의 주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방교도소의 97% 이상이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0%가 대학과정, 93.5%가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교도소에서는 80% 이상이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7%가 대학과정을 제공하고

Education Program Completers released in 1990-1991",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3, p. 36.

74) S. Steurer, L. Smith & A. Terace, Three State recidivism Study: Submitted to the Office of Correctional Educational, Correc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01, p. 29.

75)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al Education, 1999/2000.

57%의 시설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76]

직업훈련의 목적을 교육훈련의 개별화에 두고 있다. 즉 각 수형자들이 사회복귀 시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형자의 지식과 경험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수형자들에게 특정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역량 중시의 과정과 사회복귀시에 원활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습득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맞춤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훈련의 수준별 분류를 보면 기초과정, 시장 지향적 훈련과정 및 도제훈련과정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기초과정은 훈련생들에게 특수 분야의 기술습득보다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위주로 100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며 과정을 마친 후 훈련교사들이 출제하고 교육감독관들이 인증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료증이 발부된다. 시장 지향적 훈련은 기초 또는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해당 분야의 특수기술이나 고도의 직업관련 기술위주로 진행되며 훈련 중 실습시간을 통하여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수형 시설 내외에서 사용 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도제훈련과정은 훈련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성의 도제훈련청(Bureau of Apprentice-ship and Training)에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수준에서 인정한 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는 것이다.

수준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기술, 건축이나 제조관련 물질을 다루는 기술, 에너지와 수송기술 및 시장성이 있는 기술관련 종합 실습과정 등 4단계로 나누어져 실시된다. 기초단계에서 기술학습 활동과정에서는 훈련생들은 다양한 기술들의 상호연관성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기초 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생들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한 실습과정이 실시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예컨대 설계도면을 이용한 건축, 비용정산을 포함한 수지계획서 작성, 시장전략 기회 등의 과정이 있다. 또한 산업심리와 직업재활 관련 지식들을 배워 출소 후 취업 시

76) http://www.bop.gov/jobs/job_descriptions/correctional_officer.jsp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학습으로 보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있다.

수형시설 내의 각각의 직업훈련 과정은 정부 또는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게 된다. 특수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들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수형시설내의 직업훈련과정이 외부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형 시설내의 훈련과정은 과정운영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Trade Advisory Committee[77]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의 참가, 중도탈락, 수료 등에 관한 정보는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하게 된다.

New Hampshire주의 경우는 새로이 입소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Test of Adult Basic Education(TABE)시험을 실시하며 다양한 교육과 취업경험이 있는 수형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 직업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수형시설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과정을 통하여 수형자들은 기술체계 기초이론, 자재 및 연장 사용법 등에 관하여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직업교육은 의사소통기술, 재료가공기술, 에너지와 운송기술 및 종합실습의 4단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정한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은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E시험을 다시 보게 된다.[78]

직업훈련은 직접적인 기술능력 향상 이외에도 훈련 참여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77) Trade Advisory Committee는 수형시설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의 수형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하며 그 중 1회는 반드시 수형시설내에서 개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78) TABE를 실시한 결과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4단계나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고, 수형생활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A. R. Hall $ W. M Bannatyne,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Convicted Felon; How It Works Behind Prison Walls,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2000.

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 직종은 각각의 수형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선정되어 훈련기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오하이오주에서는 회계, 자동차 수리, 이발, 목공, 미용, 음식 등 27개 분야의 과정이 개설되어 26개 수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79]

플로리다주의 Hillsborough County에서는 목공, 6주간의 호텔관광분야 훈련, 식품산업에서 필요한 요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식품조리, 과일 또는 채소재배법을 가르치는 원예, 컴퓨터과정이 운영되고 있다.[80]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직업훈련학교에서 실시되는 음식조리, 인쇄가공, 및 원예과정 등을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며 단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형시설 내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들에게 사회복귀 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Inmate Placement Program)이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다. 학력수준이 낮고 취업경험이 없는 수형자들은 출소 후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형자를 위하여 최근에는 수형시설내에서 모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소후 취업을 위한 직장을 찾는 기법과 면접기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2) 職業敎育의 成果測定

현대적인 교정·교화의 목표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있다고 본다면 이를 위하여 실시되는 시설내의 직업훈련이 과연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교육의 방향 등을 직업의 시장성에 맞게끔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성과측정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즉 직업훈련의 성과는 훈련이수 수형자들이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출소 후 취업을 할 가능성과 취업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 낮은 재범가능성 및 사회부조를

79) http://www.drc.state.oh.us/web/ipp.htm
80)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들은 지역의 호텔, 모텔 또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교육을 받게 된다.

받지 않을 가능성 등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81]

미국에서는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효과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직업훈련 성과측정을 계량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82]

미국의 교정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3개 주-메릴랜드, 오크라호마, 오하이오-의 직업훈련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직업훈련의 효과에 관한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교정협회는 훈련성과측정을 위하여 출소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형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범죄행위, 가족관계, 교육수준 및 직업배경 등을 조사하고 수형기간동안의 태도와 훈련내용들을 조사하였으며 출소후 취업 및 임금수준과 교육에 관한 정보는 보호관찰인과 노동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범죄 · 재입소율은 법무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수형기간 중 교육훈련에 참여한 출소자들은 재입소율이 3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취업가능성은 높으며 임금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3]

텍사스주의 Windham School District에서 실시하는 직업과 경력개발훈련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수료생 중 75%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교육과정에 참가한 수형자 중 70%가 출소후 취업을 하였다.[84]

---

81) 1993-94년에 출소한 수형자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는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소득 수준은 14%, 취업확률은 11%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재입소율은 5%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 A. Hrabowski & J. Bobbi, T도 Benefits of Correctional Educatio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Vol. 53, 2002.

82) 교도소 직업훈련의 성과측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 Steurer, L. Smith & A. Trace, Three State Recidivism Study: A Complication and Discussio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2001; T. Fabelo, The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of Inmates in the Windham School District on Post-release Employment", Criminal Justice Policy Council, 2000; T. Flangan, Prison Education Research Project Final Report,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Center, 1994; L. Smith & M. Silverman, "Functional Literacy Education fro Jail Inmates: An Examination of the Hillsborough County Jail Education Program", Prison Journal, Vol., 74, 1994. 등이 있다.

83) S. Steurer, L. Smith & A. Trace, Three State Recidivism Study: A Complication and Discussio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2001, p. 326.

84) 평균취업기간은 7.4개월이며 연봉은 $14,251로 조사되어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신규

플로리다주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초범자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구세군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 가난한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숫자는 해마다 2,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 즉 초범자들을 모두 교도소에 수감한 경우에는 이들에 의한 재범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세군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엄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 가운데 80%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다. 더구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여 관리하였을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다.[85]

3. 有權的 更生保護制度

1) 保護觀察의 對象

보호관찰의 대상은 보호관찰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가석방의 허가를 받은 자, 가퇴원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을 거의 필수적으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80~90%를 가석방의 형식으로 출소시켜 그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 決定節次

보호관찰부 유예의 결정은 법관의 판결로 하고 그 판결전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력, 성행, 경제상태, 가정, 기타 환경에 대한 의학·심리학·사회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조사를 행하게 하여 그 조사의 결과와 의견을 붙인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판결하도록 하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가석방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보호관찰에 부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판결전에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후의 주거와 고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가석방의 허가 및 보호관찰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인력의 평균연봉 $11,7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Fabelo, The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of Inmates in the Windham School District on Post-release Employment", Criminal Justice Policy Council, 2000).

85) Peter F. Drucker, the Essential Drucker,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2007, pp. 70-71.

3) 實施方法

가) 指導監督과 輔導援護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법원 또는 보호관찰(가석방)위원회에서 정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허가조건(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피관찰자의 생활을 지도감독하고 보도원호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감독이란 준수사항의 위반이 없도록 관찰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갱생에 도움이 되는 지도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도원호란 취업, 의료, 숙식에 관한 원조와 그 밖에 귀주여비, 의류제공 등의 생활상의 원호 및 필요한 환경조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준법안에서는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나쁜 습관을 버릴 것, 둘째는 나쁜 평판이 있는 자와 교제를 피할 것, 셋째는 보호관찰관에게 정한 날에 보고할 것, 넷째는 보호관찰자의 방문에 응할 것, 다섯째는 적당한 직업에 충실히 종사할 것, 여섯째는 일정지역에 거주할 것, 일곱째는 벌금과 그 밖의 명령된 비용을 지불할 것. 여덟째는 법원이 정하는 피해변상을 하고 부양가족을 돌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住居 및 治療施設

피관찰자의 거주를 위한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고 또 판결전 조사기간 중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용하기 위한 감별치료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보호관찰위원회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않고 다른 적절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설치 운영하게 할 수도 있게 하였다. 표준법안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이용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의 수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널리 개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輔導援護의 基金

오랜 구금생활 끝에 석방되어 나오는 자에게 물질적 원호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주지까지 귀주하는데 필요한 의복 및 여비 외에 얼마간의 생계비를 대여할 수 있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任意的 更生保護制度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권적 갱생보호제도가 갱생보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만기출소자 등 임의적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그 수효가 적고 규모도 작아 미국의 형사정책 체계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민간인에 의한 출소자 보호단체가 거의 모든 대도시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 규모는 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지원을 거의 받음이 없이 민간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라 한다.

5. Halfway House

Halfway House는 중간처우(Intermediate Treatment)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Halfway House는 halfway-in, halfway-out를 포함하는 의미로 halfway-in은 구금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halfway-out은 출소 직전이나 직후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구금상태를 의미한다. Halfway House는 주로 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범성향을 감소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도소로부터 출소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기본 주식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준법시민으로 재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86]

Champion은 이러한 시설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둘째, 음식과 주거지의 제공 셋째, 직업알선과 취업지도 넷째, 클라이언트의 특별한 치료이다. 지역사회 재통합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음식과 주거지의 제공은 출소후 출소자가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외에도 직업알선이나 취업지도는 범죄자의 재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약물이나 정신건강, 성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의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

86)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6-57면.

는 범죄자에게 개별적인 치료들은 매우 중요하다.[87]

최근 시설의 다양성과 사명이 확대되면서 Halfway House의 기능과 대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Halfway House는 상담이나 약물남용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정규적인 직원을 배치하고 재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워진 시설들은 치료는 덜 강조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강조하고 치료보다는 보호(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88]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목표도 교도소와 자유간에 잠깐 머무르는 곳(stopover)의 제공(Transitional Center), 직업과 원상회복의 강조(The Restitution Center), 생존기술의 개발(Cope House), 일반적인 재활기회의 제공(Community Treatment Center) 등 매우 다양하다.[89]

미국 내 55개의 Halfway House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인 1977년의 NEP(National Evaluation Program)에 따르면 그 중 32개 기관에서 입소자의 재범률을 측정하였는데 약 1/2의 경우는 Halfway House의 출소자의 재범률이 일반 가석방자의 재범률보다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90]

1996년 미국의 Halfway House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약 800개의 Halfway House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30명 정도이고 이들 시설 중 대부분은 민영화되어 있다고 한다.[91]

Ⅱ.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1. 沿 革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는 1882년에 별방유치제도를 감옥법에 규정했으며 1887년 「金原明善」[92]이라는 사업가에 의하여 일본 靜岡縣에 일본 최초의

87) Philip L. Richel, op. cit., pp. 498-499.
88) Ibid., pp. 299-301.
89) Ibid., pp. 497-498.
90) B. R. McCarthy & B. J. McCarthy, Community Based Corrections, Cole Publishing Company, 1991, pp. 231-235.
91) 허주욱,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8호, 1998, 315면.

갱생보호단체가 설립되었다. 그 후 1888년 일본감옥협회가 설립되고 1889년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별방유치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민간보호단체의 설립을 장려하여 1926년 출소자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단체로 재단법인 보도회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일본 갱생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932년 구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사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소년원 가퇴원자, 형집행유예소년, 가석방된 소년범 등에 대하여 반드시 소년보호사의 관찰을 받도록 규정하여 소년범에 전면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1936년 각종 기소유예자와 가석방, 형기만료 된 자에게 보호사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강제조치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성인범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점에 주목할 만한 하다. 2차대전 후 갱생보호제도의 전면개편이 있었다. 1949년 범죄자예방갱생법(犯罪者予防更生法)을 통하여 가석방된 성인범에 먼저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게 되었고, 1950년에는 출소자의 보호사업도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갱생긴급보호법(更生緊急保護法) , 보호사법(保護司法) 등을 제정함으로써 갱생보호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출소자 보호사업을 한층 발전시킨 것은 보호사업법으로 대상자 및 보호방법을 표준화하고 정비하였으며 사회보호위원회제도를 만들어 민간 유지의 협력을 구하였고 정부는 재정적 원호와 함께 지도감독을 하였다. 1953년과 1954년의 형법의 일부개정 및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執行猶予者保護觀察法)의 제정을 통하여 성인과 소년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사회내 교정처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면서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 형사사법분야의 대개혁이 이루어졌다. 갱생보호에 관하여여는 1949년 범죄자예방갱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갱생보호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갱생보호사업

92) 金原明善(1832-1923)은 사업가로 일본 정강현에서 최초의 민간 갱생보호단체를 운영한 사람이다(更生保護事業の黎明 あの「鬼平」も更生保護の生みの親の一人だった).

을 갱생보호법인으로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갱생보호사업법(更生保護事業法)을 제정・시행하였다.[93]

2005년 6월 2일에는 갱생긴급구호법을 통합하고, 가석방절차와 가석방자에게 유권적 갱생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갱생보호사업법도 개정하는 등 갱생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였다.[94]

2. 社會內處遇

1) 假釋放

가석방은 개선갱생을 기대하기 위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수형자 중에서 형기만료 이전에 출소를 시키면서 남은 형기동안은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제도이다. 소년원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가석방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 가석방은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징역 또는 금고의 수형자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자기 범죄행위에 대한 뉘우침에 관하여는 ①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 ② 갱생에 대한 의욕, ③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④ 범죄인을 용서하는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수형자의 갱생의욕이 주요한 판단사유이다.

2006년도 일본법무성의 보호통계연보를 보면 2005년도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신청한 수형자는 26,379명이었으나 2004년에 이월된 신청자 3,606명을 제외하면 22,773명이다.

[표 3-1] 가석방신청의 추이[95]

사건의 종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원	총계	20,121	21,902	23,039	23,115	24,131	22,773
	가석방	14,625	16,027	17,173	17,452	18,665	17,916
	가출장	1		1			
	소년원 가퇴원	5,495	5,875	5,865	5,663	5,466	6,410

93) 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420020529046.htm -キャッシュ.
94) http://www.moj.go.jp/HOGO/hogo10.html
95) 法務省, 「第46 保護統計年報」, 2006, 山岸信雄, 前揭論文, 31頁에서 재인용

[표 3-2] 가석방신청에 대한 허가 추이

사건의 종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원	총계	19,015	20,525	21,739	21,643	22,726	21,423
	가석방	13,599	14,716	15,886	16,021	17,260	16,602
	가출장	1		1			
	소년원 가퇴원	5,41	5,809	5,852	5,622	5,466	4,821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지방갱생보호위원회[96]의 심리결과 기각율은 2000년과 2001년에는 1.7%, 2002년과 2003년에는 1.9%, 2004년에는 3.0%, 2005년에는 3.0%로 상승하고 있다. 즉 매년 가석방을 신청한 수형자 중에서 97% 이상이 석방결정을 받는 것으로 매년 21,000명 정도가 가석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2) 保護觀察

일본갱생보호의 제 활동의 중심은 보호관찰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나 비행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부과한 약속 즉,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취직의 원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에 의하여 그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에 부해진 소년,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은 후 가퇴원된 소년,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임기만료 된 가출옥 된 자,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보호관찰에 부해진 자, 보도처분에 부해져 부인 보도원에서 가퇴원 된 자인데 각자 정해진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다. 보호관찰의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의 덕망가인 보호사가 협동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자립갱생하려는 정신을 존중하면서 지도조언 등을 행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의 행장이 불량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형무소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호관찰을 받은 결과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갱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종료시키거나, 임시로 종료시켜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을 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96) 일본에서는 가석방 심사를 교도소가 있는 곳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3) 更生緊急救護

일본에서는 형무소 만기석방자, 기소유예자, 가출옥 기간 종료자들에게는 보호관찰에 의한 지도나 원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자들 중에는 주거나 생활원조를 해줄 친척이 없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있다. 긴급갱생보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면한 숙소나 식사제공, 취업의 원조, 사회생활 훈련 등의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무소 등에서 석방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원조한다.

3. 更生保護機關

갱생보호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성에서 관장하며 보호국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각지의 지방 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1) 地方更生保護委員會

전국 8개소의 고등재판소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년원과 형무소 등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가석방에 관한 일 등을 하고 있다.

2) 保護觀察所

일본의 보호관찰소는 각 지방재판소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3개시에 3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이외의 27개 도시에 보호관찰관이 주재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환경조정, 갱생긴급보호, 은사의 신청절차,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관계, 봉사자 단체의 육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등을 하는 중앙갱생보호 심사회, 교정보호심의회, 보호사 선교회 등이 갱생보호업무를 하고 있다.

3) 更生保護 從事者

가) 保護觀察官

보호관찰관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의 갱생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 보호관찰의 실시 등 갱생보호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국가공무

원으로써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사무국과 보호관찰소에 배속되어 있다.

나) 保護使

보호사는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된 무급, 비상근의 국가공무원이다. 보호관찰관과 협동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특성을 살려 갱생보호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보호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갱생에 필요한 가족관계, 취학, 취업 등의 조정을 도모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비행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 更生保護法人

일본의 갱생보호법인은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이다. 형무소등에서 석방된 사람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의지할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갱생에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숙박이나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업의 원조나 생활지도등 기타의 보호를 행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조를 하고 있다.

다음은 갱생보호법인에서는 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표 3-3] **갱생보호법인의 업무내용**

구 분	내 용
보도	교양, 근로, 자율, 협조정신 함양, 친족, 연고자 사이의 융화도모, 출소자의 인적환경 개선과 조정, 공공위생복지, 기타 시설알선, 직업보도, 취업알선 등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영위 원조
숙소제공	당장 주거가 없는 자에게 숙소 및 숙박에 필요한 실비 제공
식사 및 숙소제공	숙소제공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식비를 자비로 할 수 없는 경우 숙박 및 식사제공 병행
식사제공	식비를 자비로 할 수 없는 경우 식사를 제공
의료비 및 보양의 원조	질병 및 부상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진찰진료
귀주의 원조	연고지에 귀주를 희망하는 자가 소지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족한 경우 여비지급·대여 또는 귀주동반
금품의 제공 및 대여	취업·응급생활 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금전, 의류, 기구 등을 제공하고 대여

4) 更生保護의 協力者

가) 婦人會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나 비행에 빠진 사람들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봉사단체이다. 전국에 20만 여명의 회원이 있어 갱생보호사상의 보급활동, 미니집회 등의 범죄예방활동, 보호사, 갱생보호회, BBS회 활동에 대한 협력활동,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조활동 등 다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나) BBB會

비행에 빠졌거나, 빠질 우려가 있는 소년의 좋은 친구가 되거나, 형과 누이의 입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활동” 외에 비행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봉사단체로서 현재 일본전역에 약 6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B.B.S의 취지에 찬동하고 활동을 원하는 열의 있는 청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 協力雇用主

범죄나 비행 전력자들은 그의 전력 때문에 직업을 얻기가 곤란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협력고용주는 비행이나 범죄력이 있는 자의 사정을 알고서 직장을 제공하여 그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주가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갱생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협력고용주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라) 其 他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갱생보호의 제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각자가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에 관심을 갖고 갱생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함으로써 그 갱생이 촉진됨과 아울러 범죄, 비행이 미연에 방지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밝은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4. 更生保護法의 制定

2004년 이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중대 범죄를 일으키는 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법무성은 2005년 재범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소재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마련을 위하여 갱생보호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기초로 하여 2007. 6. 8. 사회내처우 전반에 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갱생보호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의 범죄자예방갱생법(犯罪者予防更生法),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執行猶予者保護觀察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보호관찰 실시상황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데 충실하고, 가석방의 심리과정에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97]

---

97) http://www.asahi.com/ad/clients/waseda/opinion/opinion246.html

새로 제정된 갱생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정리하였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하였고, 보호관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준수사항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순응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복귀의 환경을 조정하는 데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가석방자 · 소년원 가퇴원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의 개시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이 생활환경의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가석방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범죄에 대한 뉘우침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심정 등이 보호관찰대상자인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네 번째는 보호관찰관과 범죄예방위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98]

제 2 절 우리나라의 更生保護制度

Ⅰ. 更生保護機關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사업에서 출발하여 차츰 국가적 사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갱생보호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사적조직으로 갱생보호운영을 사인 또는 사적단체가 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반공적 조직으로 갱생보호업무는 사적단체가 행하되 그 감독은 국가가 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이다. 셋째는 공적조직으

98) 小長井 賀與, “犯罪者の社會的包攝と諸機關連携”, 「罪と罰」, 日本刑事政策研究會, 44卷 2号 2007. 3., 6-15頁 .

로 갱생보호업무를 국가의 책임 하에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민간단체와 국영이 병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민간단체와 국가기관이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두는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까지의 규정으로 민간인의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행정갱생보호회,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사단법인 양지뜸, 사단법인 세계교화갱생보호협회,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사단법인 빠스카 교화복지회 등 6개의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공법인체로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 이외에 전국 대도시에 14개의 지부가 있고 9개의 출장소가 있으며, 각 지부에는 갱생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이 갱생보호업무를 돕고 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중앙조직(본부)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의 임무는 공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공단의 기본방침에 따라 보호사업의 운영을 총괄한다.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한편 이사 및 감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 각 지부에는 지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공단의 직원은 1급~7급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는데 4급 이상의 간부직원의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행하며 5급 이하의 직원의 임면은 사후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1986년까지는 지부장(3급)까지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갱생보호법의 개정을 계기로 이사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하여 독자적 자율

성이 확보된 듯 하나 아직까지도 4급 이상의 간부직원에 대한 임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Ⅱ. 更生保護對象者 및 保護節次

1. 更生保護對象者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사회화 교육,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사전면담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라도 갱생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자만이 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인 것이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립기관,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수용보호 기타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 갱생보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保護節次

첫째, 갱생보호를 받을 대상자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소자는 언제든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또는 사업자에게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주로 교도소나 소년원 등이 될 것이나 법원,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도 포함한다. 구갱생보호법과 비교한다면 본법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의 주체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특정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갱생보호 담당기관의 보호결정이 있어야 한다.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공단 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기로 결정한 때에

는 지체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방법의 결정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본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자 개인의 전과의 죄질,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가 되도록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실시를 한다. 즉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자립지원, 선행지도를 한다.

넷째. 보호종료를 한다. 보호종료는 숙식제공 보호종료와 선행지도 보호종료로 대별되는데 숙식제공 보호종료는 갱생자립한 자, 보호자에게 인계된 자, 구호단체 또는 독지가에게 의탁알선 된 자, 사망 또는 무단퇴소한 자, 범죄행위로 구속된 자, 징계퇴소 된 자를 말한다. 선행지도 보호종료는 선행지도 기간이 경과된 때, 사망한 때, 선행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때, 재범하여 교도소에 재수용되는 등 선행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보호를 종료하게 된다.

Ⅲ. 更生保護의 方法

1. 宿食提供

1) 意　義

숙식제공이란 공단의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귀주지가 없고 보호를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연고자가 없는 자 또는 귀주지가 있어도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重要性

범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갈 곳이 없거나 가족과 연고지는 있지만 여러 제반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들은 사회 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는 당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바로 범죄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다.

재범을 한 이들은 다시 교정시설에서 교정 · 교화하여 출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들의 범죄주기는 정해져 있는 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갱생보호사업에 있어서 숙식제공업무는 무의무탁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소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고, 민간독지가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민간허가법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제외한 민간허가법인의 활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는 연평균 약 12만명 이상으로 이중 8.1%에 해당하는 9,700여명은 무의무탁자로 숙식제공보호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 재범이 우려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생활관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이 극히 한정되어 연간 2,500명 정도만 숙식제공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년 동안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한 숙식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숙식제공실적 및 예산[99)]**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적(명)	2,254	2,336	2,495	2,491	2,680	2,745
예산(천원)	717,864	800,578	771,495	871,114	1,138,105	1,609,142

2. 保護實施

99)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1) 實施節次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를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소자는 본인이 숙식제공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갱생보호사업 실시기관에 숙식제공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숙식제공보호신청을 받은 갱생보호사업 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보호의 필요여부를 결정한 후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호방법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숙식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숙식제공보호가 개시되면 갱생보호대상자는 자립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고 갱생보호실시기관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과 자조,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함은 물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생활관에 입소한 갱생보호대상자의 기능 및 적성을 조사하여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장에 취업을 시켜 근로에 의한 자활독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保護支援

무의무탁출소자가 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게 되면 무의도식하며 무의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종 생활지도를 하고 종교인을 초청하여 심성순화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퇴소후의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은 약간의 본인 용돈을 제외하고는 본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예금하여 공단에서 관리해 주고 있으며 수시로 입금액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대행해주고 무호적자에게는 호적을 만들어 주며 생일자에 대해서는 매월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주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에게는 자매결연이나 의료지원, 유적지 견학 뿐 만아니라 정

신적이고 물질적인 지도와 원호 등 자립하여 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퇴소하여 건전한 일반시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리로 인하여 숙식제공보호를 받은 출소자들은 대부분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되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 犯罪者의 更生保護現況

제 1 절 收容機關의 更生保護

Ⅰ. 職業敎育을 통한 支援

그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인의 직업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최근에는 직업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국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직업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교육의 실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일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직업훈련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법무부 교정국 작업훈련과에서 2007년 3월 발표한 직업훈련수형자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말 직업훈련 수료자 중 2,621명(남자 2,383명,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 101명, 천안소년교도소의 수용되어 있는 소년 91명,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관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46명)과 직원 및 외부강사발전의 위해 정보화교육 수료 및 교육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영등포교도소 등 전국 27개의 145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5일간에 걸쳐 현행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 분석을 하였다.[100]

1. 受刑者 說問調査 結果 分析

1) 學歷

[표 4-1]　　학　　력

100) 법무부 교정국, 수용자 정보화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설문분석(2007. 03).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장애인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621(100)	2,041(100)	342(100)	101(100)	91(100)	46(100)
초등학교 졸업이하	182(6.9)	161(7.9)	6(1.8)	5(5.)	5(5.5)	5(10.9)
중학교 졸업 (중퇴포함)	792(30.2)	650(31.8)	54(15.8)	36(35.6)	46(50.5)	6(13)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1,230(46.9)	940(46.1)	190(55.6)	32(31.7)	38(41.8)	30(65.2)
대학중퇴이상	417(15.9)	290(14.2)	92(26.9)	28(27.7)	2(2.2)	5(10.9)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분포는 정예직업훈련생 82.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장애인 76.1%, 비정예훈련생 60.3%, 여자 59.4%, 소년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중퇴이상의 고학력자는 여자훈련생의 27.7%, 정예직업훈련생이 26.9%, 비정예훈련생이 14.2%, 장애인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職業敎育의 始作 時期

[표 4-2] 직업교육의 시작시기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5(100)	2,041(100)	342(100)	101(100)	91(100)
1년미만	591(23)	428(21)	85(24.9)	41(40.6)	37(40.7)
1년이상-3년미만	1,317(53.1)	1,041(51)	187(54.7)	41(40.6)	48(52.7)
3년이상-5년미만	412(16.0)	344(16.9)	46(13.5)	16(15.8)	6(6.6)
5년이상	255(9.9)	228(11.2)	24(7.0)	3(3.0)	

설문자의 평균적인 형기는 7년 11월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수형자가 형이 확정된 후 직업교육을 접하게 된 최초의 시기는 3년 이내가 76.1%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형기초반부터 직업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入所 經歷

[표 4-3] 입소경력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5(100)	2,041(100)	342(100)	101(100)	91(100)
1회	1,333(51.8)	975(47.8)	221(64.6)	92(91.1)	45(49.5)
2회	591(23.0)	475(23.3)	78(22.8)	4(4.0)	34(37.4)
3회	330(12.8)	287(14.1)	27(7.9)	4(4.0)	12(13.2)
4회이상	321(12.4)	304(14.9)	16(4.7)	1(1.0)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험으로 볼 때는 처음 입소한 사람의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이 51.8%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초범자가 직업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수형자가 직업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회 이상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7.6%로 직업교육이 재범방지에 효율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4) 職業敎育參與의 目的

[표 4-4] 직업교육참여의 목적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3(100)	2,041(100)	340(100)	101(100)	91(100)
취업, 창업 등 출소 후 가족생계를 위해서	1,388(53.9)	1,055(51,7)	205(60,3)	60(59.4)	68(74,7)
가석방에 유리	420(16.3)	375(18.4)	38(11.2)	1(6.9)	
지루한 수용생활에 변화를 위해서	287(11.2)	231(11.3)	37(11.3)	19(18.8)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334(13.0)	274(13.4)	43(12.6)	12(11.9)	5(5.5)
기 타	144(5.6)	106(5.2)	17(5.0)	3(3.0)	18(19.8)

직업교육을 받는 목적으로는 출소한 후에 취업, 창업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수형자가 53.9%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범죄자의 생계수단의 확보문제가 재범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석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6.3%로 그 뒤를 이었다.

5) 出所後 도움되는 프로그램

[표 4-5] 출소후 도움되는 프로그램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37(100)	2,003(100)	342(100)	101(100)	91(100)
직업훈련	1,176(46.5)	851(42.5)	191(55.8)	61(60.4)	73(80.2)
종교활동	437(17.2)	356(17.8)	49(14.3)	27(26.7)	5(5.5)
학과교육	179(7.1)	151(7.5)	14(4.1)	6(5.9)	8(8.8)
교도작업	89(3.5)	79(3.9)	9(2.6)	1(1.0)	
정보화교육	560(22.1)	489(24.4)	68(19.9)	3(3.0)	
특별활동	91(3.6)	77(3.8)	11(3.2)	3(3.0)	

교정기관에서 받는 교육 중에서 출소한 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정보화교육이 22.1%, 종교활동이 17.2%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용성이 있는 직업교육과 함께 교회활동 등 정신교육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6) 出所後 生業으로 하고 싶은 일

[표 4-6] 출소후 생업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3(100)	2,041(100)	341(100)	100(100)	91(100)
취 업	858(33.4)	655(32.1)	116(34.0)	38(38.0)	49(53.8)
창 업	1,200(46.6)	947(46.4)	182(53.4)	48(48.0)	23(25.3)
아무일이나 하겠다	301(11.7)	255(12.5)	27(7.9)	7(7.0)	12(13.2)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214(8.3)	184(9.0)	16(4.7)	7(7.0)	7(7.7)

직업교육을 받는 수형자들이 취업(33.4%)보다는 창업(46.6%)로 나타나고, 취업과 창업 중에서 선택할 경우는 창업이 62.9% 취업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37.1%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직업교육을 받더라도 출소 후 사회적 냉대 때문에 취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職業敎育課程

[표 4-7] 직업교육과정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0(100)	2,036(100)	342(100)	101(100)	91(100)
기능사과정	1,988(77.4)	1,527(75.0)	269(78.7)	101(100)	91(100)
산업기사과정	506(19.7)	436(21.4)	70(20.5)		
기사 · 기능장과정	76(2.9)	73(3.6)	3(0.9)		

수형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직업교육은 기능사과정이 77.4%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사 훈련을 받는 수형자도 19.7%, 기사 이상 고급과장 훈련을 받는 수형자는 2.9%에 불과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급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 3D業種의 就業希望 與否

[표 4-8] 3D업종 취업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59(100)	2,025(100)	342(100)	101(100)	91(100)
있다	1,612(63.0)	1,248(61.6)	252(73.7)	55(54.5)	57(62.6)
없다	947(37.0)	777(38.4)	90(26.3)	46(45.5)	34(37.4)

출소한 후에 생업을 위해서는 3D 업종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D 업종이라도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수형자가 63%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출소후 갱생보호기관에서의 직업교육을 중소기업 경영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범죄자에 대한 갱생지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就業을 保障할 수 있는 職業敎育

[표 4-9] 취업보장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5(100)	2,041(100)	342(100)	101(100)	91(100)
자격취득	363(14.1)	305(14.9)	32(9.4)	10(9.9)	16(17.6)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숙련	1,349(52.4)	1,057(51.8)	195(57.0)	62(61.4)	35(38.5)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422(16.4)	347(17.0)	57(16.7)	11(10.9)	7(7.7)
효과적인 취업알선	368(14.3)	272(13.3)	52(15.2)	17(16.8)	27(29.7)
기타	73(2.8)	60(2.9)	6(1.8)	1(1.0)	6(6.6)

출소한 후에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라고 응답한 수형자가 5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

회적응훈련프로그램이 16.4%, 효과적인 취업알선이 14.3%, 자격증 취득이 14.1%로 나타나고 있어 교정시설과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직업교육의 방향은 취업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民間企業과 連繫한 맞춤형 敎育

[표 4-10] 민간기업과의 연계교육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5(100)	2,041(100)	342(100)	101(100)	91(100)
적극 참여	1,809(70.2)	1,435(70.3)	294(86.0)	66(65.3)	14(15.4)
내용을 보고 참여	602(23.3)	483(23.7)	36(10.5)	28(27.7)	55(60.4)
별로 관심이 없다	164(6.4)	123(6.0)	12(3.5)	7(7)	22(24.2)

민간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2%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경영자와 연계한 직업교육이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職業敎育의 滿足度

[표 4-11] 직업교육의 만족도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2,570(100)	2,036(100)	342(100)	101(100)	91(100)
매우 만족	454(17.7)	349(17.1)	72(21.1)	16(15.8)	17(18.7)
대체로 만족	940(36.6)	746(36.6)	112(32.7)	49(48.5)	33(36.3)
보 통	756(29.4)	606(29.8)	102(29.8)	25(24.8)	23(25.3)
조금 불만족	305(11.9)	248(12.2)	30(8.8)	9(8.9)	18(19.8)

매우 불만족	115(4.4)	87(4.3)	26(7.6)	2(2.0)	

현재 받고 있는 직업교육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4.3%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으로 16.3%로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훈련수준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12) 받고 싶은 職業敎育 種目

[표 4-12] 직업교육의 희망종목

구 분	전 체	남 자		여자	소년
		비정예 훈련생	정 예 훈련생		
계	566(100)	324(100)	141(100)	80(100)	21(100)
자동차정비	106(18.7)	80(24.8)	26(18.5)		
정보화교육	103(18.2)	54(16.8)	40(28.4)	9(11.3)	
제과제빵	100(17.7)	51(15.8)	19(13.5)	23(28.7)	7(33.3)
한식조리	87(15.4)	55(17.0)	24(17%)	8(10.0)	
화훼장식	27(4.8)			27(33.8)	
중식조리	23(4.1)	4(1.2)	10(7.1)	9(11.3)	
전기	15(2.7)	11(3.5)	2(1.5)		2(9.5)
용접	15(2.7)	3(0.9)	4(2.8)		8(38.1)
미용	14(2.5)	9(2.8)	1(0.7)	4(5.0)	
실내건축	12(2.1)	4(1.2)	4(2.8)		4(19.1)
이용	11(1.9)	11(3.4)			
중장비	10(1.8)	7(2.2)	3(2.1)		
컴퓨터그래픽	8(1.4)	5(1.5)	3(2.1)		
조경	7(1.2)	6(1.9)	1(0.7)		
외국어교육	6(1.0)	6(1.6)			
공인중계사	6(1.0)	5(1.5)	1(0.7)		
PC정비	5(0.9)	4(1.2)	1(0.7)		
양복	4(0.7)	4(1.2)			

CAD	4(0.7)	3(0.9)	1(0.7)		
지게차운전	3(0.5)	2(0.6)	1(0.7)		

앞으로 받고 싶은 직업교육으로는 자동차 정비가 18.7% 가장 높았으나 정보화교육, 제과제빵, 한식조리, 화훼장식, 중식조리 등 대부분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

2. 職業敎育과 그 成果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에 용이한 직종중심의 직업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969년 6월 3일 전국의 19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한 이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출소 후 안정된 직업마련으로 자활능력을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내 우수기업체 훈련원에 출장직업훈련[101]을 실시, 산업현장과 연계한 훈련으로 출소 후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등 고급기능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전기CAD 기능사 등 5개 사양직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전산응용기계제도, 인테리어시공, 건축기사실무 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 7개를 신설, 80개 직종 4,300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 訓練機構

수형자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분장하는 부서로는 법무부 교정국의 교육교

101) 1995년 9월 4일 동아건설산업(주)직업훈련원에 외부출장직업훈련 실시하고 천안소년교도소등 2개 기관 6개월 훈련과정을 두어 ’95년에 89명, ’96년에 299명, ’97년에 387명, ’98년에 391명, ’99년에 261명, 2000년에 51명 대해 외부출장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2001년 이후 미실시).

화과, 지방교정청의 작업훈련과 그리고 일선교정시설의 작업훈련과를 들 수 이다. 관련교정기구에는 법무부 교정국의 작업훈련과가 있는데 직업훈련을 위한 예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직업훈련관련기구의 분장사무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3] **직업훈련 관련 기구의 분장사무**

기관	부서	분장사무
법무부 교정국	교육 교화과	①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②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방 교정청	작업 훈련과	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 용도 및 결산 ②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③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구매 조달, 국유재산 관리 ④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 승인 ⑤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⑥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일선 교정시설	작업 훈련과	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 수급 ② 작업계획, 경영, 관리 ③ 작업상여금의 계산, 작업통계에 관한 사항 ④ 수형자 직업훈련

자료 :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이를 통하여 보면 기본정책을 입하는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직업훈련은 교육교화과 교도작업은 작업훈련과로 각각 분리·운영하고 있으나, 그 집행을 감독하는 지방교정청이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일선교정시설에서는 작업훈련과에서 통합 · 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職業訓鍊의 形態

직업훈련의 형태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14] **직업훈련의 형태**

분류기준	종 류
훈련기준 준수여부	① 기준훈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목표·교과내용·시설·장비·교사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훈련 ② 기준 외 훈련 :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실시하는 훈련
훈련방법	① 집체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②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③ 통신훈련 :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간 실시하는 훈련
훈련과정	①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②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③ 전직훈련 :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자료 :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그 외에 일반 직업훈련이라는 특이한 훈련과정을 두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은 노동부와 협의하여 그 설치를 승인 받아 실시하는 훈련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일반 직업훈련은 기능자격 검정종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노동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시행방법에 따라 정예직업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 직업훈련, 작업병행 직업훈련,

교육병행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한다.(수형자 직업훈련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참조) 교도작업과의 병행여부와 관련하여 공공직업훈련은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않고 오로지 직업훈련에만 종사하는 전업훈련이라고 한다면 일반 직업훈련은 교도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어 작업병행훈련, 즉 일하면서 배우는 겸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훈련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양성훈련, 정예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 등으로 세분된다. 즉 훈련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 정예훈련, 향상훈련으로 일반 직업훈련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구분되고 그 외 외부 출장 직업훈련이 있다.

나) 職業訓鍊의 實施 體系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과정의 기능자격시험에 응시한다. 합격자는 습득한 기능의 종류에 따라 상위 기능의 취득을 위한 훈련생으로 선발되거나 관련 교도작업에 취업케 하여 반복훈련을 실시한다.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동일과정의 훈련생으로 재편입하여 이를 수료시킨 후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도작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은 비록 취업유망직종이라 할지라도 교도작업에의 취업을 통한 현장실습의 기회가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능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전직훈련에 의해 교도작업 관련 직종의 자격을 취득시켜 현장실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기능공을 양성한다고는 하나 이는 앞서 취득한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도작업 관련 직종의 기능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현장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러나 교도작업의 업종에는 사양직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취약점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2000년도 이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산업현장의 고급기능인력 수요에 부여하여 첨단·취업유망과정을 신설하였고 선반, 이용, 양복, 자동차정비 등 사양직종 훈련과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법무부의 직업훈련 쇄신방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도작업의 업종을 취업유망직종으로 교체하면서 첨단·취업 유망과정의 직업훈련과 연계를 시켜야 하나 이는 많은 재원과 수형자의 정역의무와의 관련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나 꾸준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다) 職業訓鍊의 種類

수형자직업훈련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의 각종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또는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102]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 직업훈련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4-15] 직업훈련의 종류별 목표 및 내용

훈련종류		목표	내용
공공 직업 훈련	양성훈련	기능사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에 대한 6개월~1년 과정의 직업훈련
	정예훈련	기능사 산업기사	중학교 이상 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로서 정예 직업훈련소인 영등포(교), 청주(교), 천안(소), 감천(소), 순천 정예 훈련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6월~2년 과정의 직업훈련
	향상훈련	산업기사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2년 과정의 직업훈련
일반 직업 훈련	양성훈련	기능사	기능사 과정(6월~1년)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훈련
	향상훈련	산업기사	산업기사 과정(2년)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급훈련	기사이상	기사이상 과정(2년 이상)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훈련
외부 출장직업훈련		기능사	사회 우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내 직업전문학교에 수형자를 출·퇴근 시키며 실시하는 훈련

자료 :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102) 수형자 직업훈련규정(법무부예규 제526호 1999. 12. 31) 제2조에서 동규정의 적용범위를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양자를 수용자로 통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것에 두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직업훈련의 대상자 대부분이 수형자이어서 미결수용자를 포함하는 용어인 수용자 직업훈련이라는 용어 대산 수형자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①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정예훈련, 향상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양성훈련은 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에 대한 기초과정이 필요한자와 학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자소에서 기초적인 기능을 연마시키는 훈련이며, 정예훈련은 영등포·청주·순천·천안 및 김천소년교도소[103] 정예직업훈련소에 집결시켜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향상훈련은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로서 자소 또는 정예직업훈련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② 일반직업훈련 :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같고, 고급기술훈련은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목표로 기사 전문과정 인가를 받아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의정부, 원주 청주, 대구, 진주, 대전, 공주, 홍성, 광주, 군산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4-16] 직업훈련 인원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4,506	4,474	4,605	4,550	3,818	3,556
양성·향상훈련	3,028	2,741	2,681	2,888	2,329	2,179
정예훈련	976	1,182	1,237	919	894	811
일반훈련	451	551	687	743	595	566
외부출장훈련	51	-	-	-	-	-

자료 : 2006 법무연감

2) 成 果

103) 2004. 12. 29. 직제개편에 의해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교도소 기능을 폐지하고 김천교도소로 재개정 하였다.

가) 技術資格 取得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69년 직업훈련을 개시한 이후 2,315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7,063명이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공학분야 최고의 기술자격으로 박사학위 3년 경력을 인정받을 만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술사 시험에 수형자로서는 최초로 홍성교도소 수형자가 합격하였으며, 석사급 수준의 학력으로 평가받으며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기능장 부문에서 수형자로서는 2000년 대전교도소, 2001년 진주교도소, 2002년 청주교도소, 2003년 원주·청주교도소에 이어 2004년도에 원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에서 총3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표 4-17]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연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4,258	3,540	3,998	3,800	3,651	3,448	2,870
기술사	-	-	-	-	1	-	-
기능장	1	1	1	2	3	3	8
기사	3	4	7	3	3	8	21
산업기사	289	214	327	288	311	240	264
기능사	3,965	3,321	3,663	3,507	3,333	3,197	2,577
응시인원	4,400	4,450	4,337	4,350	4,054	3,927	3,447

자료 : 2006 법무연감

나) 機能競技大會 參加

직업훈련 수료 후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2006년도에는 173명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였다.

[표 4-18]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연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29	231	214	241	224	204	173
지방대회	211	213	200	227	202	187	159
전국대회	18	18	14	14	22	17	14

자료 : 2006 법무연감

다) 職業訓鍊敎師 現況 및 新技術 習得

① 직업훈련 담당자 : 수형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가 있으며, 공공직업훈련소가 설치되어 있는 32개의 교정시설별 훈련과정과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 등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1978년 12월30일 교도소직제(대통령령 제9271호) 개정으로 직업훈련교사직을 신설, 일부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직업훈련교사 31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지도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1979년 9월에는 영등포, 김해(현재의 부산), 청주 등 3개 교도소에 종합정예직업훈련소가 설치되었다.[104] 이는 종전의 대부분의 직업훈련이 교도작업에 취업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작업병행훈련의 형태를 취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이 교도작업에 취업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작업병행훈련의 형태를 취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이 고도산업사회의 적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취해진 개선 조치였다. 이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정예훈련은 일체 교도작업을 부과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직업훈련만을 일과로 하는 전일제 훈련형태이다.

② 신기술 습득 : 전국 교정기관의 모든 직업훈련교사들이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첨단직종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신지식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각 교정청별로 지역 폴리텍대학, 직업 전문학교 등 사회직업훈련기관을 정기적으로 견학하고,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에 힘쓰고 있다.

4) 訓練中의 處遇

① 훈련전념을 위한 보장 :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기간 중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104) 김해(현재의 부산)교도소에 설치되었던 종합정예직업훈련소는 1985년 1월 4일 순천교도소로 이전되었다.

을 억제하고 직업훈련시간 중에는 교화행사 참가 등을 지양하고 직업훈련과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는 배제되고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 등을 지급하여 일과 후 거실에서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상여금의 지급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는 소정의 작업상여금을 계상한다. 원래 작업상여금은 교도작업에 취업하는 수형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직업훈련생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비생산작업으로 분류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105]되는 바뀐 기준으로도 1일 최고액이 700원에 불과하다.

[표 4-19] **작업상여금 1일 지급 기준표** 단위: 원

구분	생산 작업						비생산작업					
류별	1류			2류			관용작업			교육,직업훈련		
등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5,500	4,000	3,000	2,300	1,800	1,300	1,100	900	800	700	650	600

자료 : 법무부 교정국

위의 표와 같이 작업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성격이어서 근본적으로 소액이며 그나마 훈련생에 대한 작업상여금은 실제 작업종사자에 비하여 월등히 적고, 훈련성적의 우열에 따른 등급간 차이도 거의 없다. 물론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도작업생산수익에 의해 운영되어 생산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직업훈련생에게 작업상여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직업훈련생에 대한 향상된 처우일 수 있지만 보다 발전적으로 작업상여금이 훈련생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지급액을 높이고 훈련성적간 차등 지급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③ 훈련생에 대한 포상 : 소장은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훈련생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 또는 각종 처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

105) 법무부 예규 제748호, 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규정(2006. 3. 28. 개정).

형자 직업훈련규정 제27조)

④ 가석방 : 가석방은 수형자를 형기종료 이전에 석방시켜 사회에 복귀케 하는 사회내처우제도로서 넓은 의미의 개방처우라 할 수 있으며[106] 모든 수형자가 가장 바라는 처우일 것이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석방만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이는 수형자로 하여금 직업훈련에 정진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전국기능대회에 입상하거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107]에 의거하여 누진계급을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고 실무상 가석방 신청시 유리한 참고사항이 된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기능대회에 입상하거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시에는 가석방요건이 되는 자는 가석방이 우선적으로 신청될 수 있게 하고 가석방 심사기준 미달자는 심사신청기준의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Ⅱ. 情神敎育을 통한 支援

1. 敎誨活動 프로그램

이 지상의 지옥은 감옥(교도소)이라고 말하는 교도소가 종교에 의해 구원받기 시작한 것은 서기 367년이라고 한다. 로마의 황제 바렌티니아 1세는 처음으로 중죄인 이외의 수인에 대해 사면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수인사면의 최초의 사건이다. 수인사면이라는 것은 후일에 보석, 가석방, 은사의 기초적 사상이 된 것이다. 그 후 호노리우스 황제가 기독교의 성직자에 대하여 "당신들은 감옥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라"고 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인에게 종교적 보호위안이 의결되고 암브로스 등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수인의 종교감화를 그 정강의 하나로 삼았으며, 1584년에 발바로모이스가 성경의 교육을

106)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3, 603면

107)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작하여 수인의 개과천선에 주력하였던바 이것이 종교교회 (宗敎敎誨)와 종교교육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일본은 1872년에 본원사에서 불교교회, 1887년에 북해도에서 기독교교회사를 파송하여 종교교회의 제도적 확립을 기하였다. 우리나라는 1894년에 감옥규칙을 제정하였을 때 비로소 교화적 시설의 일부가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불교교회만 실시되었고, 그 후 1962년 재소자교화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뒤에는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형자의 신앙심을 조장하는 취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일반교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2. 社會關係 回復프로그램

1) 社會見學

수형자들에게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를 통한 심성순화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4,106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 유적지, 산업시설 등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4-20] **사회견학인원** 단위: 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원	6,026	8,182	3,801	4,216	4,265	4,106

자료: 2006 법무연감

2) 外部通勤制度

수형자 외부통근제도(구외공장)이란 기술습득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타개를 목적으로 91년에 도입되어 운영과 관리는 민간인이 맡고 수형자는 생산라인에 투입되며 현재 전국에 30여 곳의 업체에 1,400여명의 수형자들이 일하고 있다.[108] 외부통근제도는 주간에는 산업현장

108) 중앙일보, 2006. 2. 9. "전주교도소 모범수들이 불량률 0을 일궜다."(http//

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고 야간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제도로써 일일평균 취업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사회 일반기업체 취업 외에 교도소 구외부지에 공장을 조성하고 우수업체를 유치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오고 있다. 또한 외부통근 취업자가 수령한 임금[109] 중 7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출소 후 지급하여 출소 후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도소 밖의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게 하여 기술습득과 사회정보 및 실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출소 후 사회생활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성실한 작업으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3) 社會關係回復 프로그램의 問題點

사회관계 회복프로그램은 사회적응 및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견학제도의 경우 현행처럼 반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견학장소 및 견학대상자 확대 그리고 견학기간 연장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통근제도는 본래의 목적이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보안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장기수형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습득을 도모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기하려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기수형자나 과실범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다보니 장기수형자는 출소직전까지 자소의 폐쇄시설에서 처우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외부통근 작업의 종목은 대부분이 일반사회에서는 사양산업이거나 기능이 필요치 않은 단순작업들이어서 직업훈련의 성격에 부적합하고, 생업으로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직종들일 뿐만 아니라 전문기능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 거의 없으므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외부직업훈련과정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

www.joins . com.

109) 외부통근제도(구외공장)의 수형자 1인당 임금은 2006년 기준 하루 15,500원으로 업체가 지급한다.

제 2 절 更生機關의 保護

갱생보호는 출소자에 대한 자활 독립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등의 방법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수공익법인인 한국갱생보호공단과 갱생보호사업 민간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바, 법무부는 갱생보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시설, 재원 등의 부족과 출소자에 대한 냉대의식이 팽배하여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하여 2000년도에 비전임 민간전문가로 수원 지부장을 첫 임용한 후 2004년 10월 광주지부장, 2005년 4월 서울북부지부장, 2005년 11월 창원지부장을 민간전문가로 확대 임용하였다. 특히 2002년도에는 갱생보호사업의 주축인 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이사장을 외부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4. 9. 1.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였다.[110]

그 외 유명 연예인을 한국갱생보호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단의 경영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상자의 자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관운영 사업에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인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하였다.

---

11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200면.

Ⅰ. 更生機關

1. 公團의 經營革新

1961년 특수법인인 갱생보호회의 발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갱생보호사업이 시작되어 무의탁 출소자를 위한 숙식제공, 극빈출소자의 원활한 귀향을 위한 귀주여비 지원, 생업조성금품 지원, 직업이 필요한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 취업알선, 보호관찰 시범실시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111)]

그러나 산업화, 근대화, 정보화 등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출소자 자립지원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나 직업훈련 단가 인상 · 훈련강화 대책 등의 질적인 변화없이 종래의 방법을 답습하고 관례적인 업무처리가 일반화 되는 등 보호사업과 공단 운영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호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한 질적인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갱생보호공단 혁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組織 改編

공단 운영에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자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서울북부 · 수원 · 창원 · 광주지부장에 임용하였고 기능직의 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여 각 지부간 경쟁을 유도하고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4급 간부직 직위통합제와 성과관리제를 연계 실시하여 성과가 부진한 지부장은 출장소장으로 강등보임하거나 재계약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인사조치와 함께 성과가 우수한 4급 출장소장을 지부장으로 전격 발탁하는 완전경쟁체제를 실현하고 있다.

---

111) 상게서, 201면.

3. 更生保護事業 財源擴充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곤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2003년 8월에 수익금 등 관리지침을 제정, 각종 기증금과 수익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갱생보호기금으로 적립하고, 공단본부에 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단차원에서 기금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원확충을 위한 기금의 활용 폭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갱생보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2006년도 국고보조금을 전년대비 14.4%나 증액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Ⅱ. 公團의 更生保護 現況

1. 更生保護事業 現況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2005년 총 47,560명에 대하여 갱생보호사업을 실시, 년간 사업계획의 121.5%를 달성하였으며, 사업 분야별로는 사전면담이 20,174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여 활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기타 자립지원 사업으로 무연고 출소자 1,866명에 대한 자매결연과 77쌍의 합동결혼식 주선 등으로 인간애에 기초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분야별 사업실적은 <표>와 같다.[112)]

[표 4-21] 분야별 사업실적

112) 법무연수원, 전게서, 202면.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8,110	35,882	35,989	39,796	42,103	47,560
숙식제공	2,151	2,254	2,336	2,495	2,491	2,680
여비지급	10,291	–	–	–	–	–
간급원호	–	–	–	–	241	1,641
사전면담	16,413	17,002	18,044	18,994	20,286	20,174
생업조성 금품지급	2,749	–	–	–	–	–
취업알선	3,713	3,422	3,284	3,328	3,142	3,373
직업훈련	832	1,421	1,407	1,491	1,280	1,650
사후관리	–	4,607	4,208	4,423	4,668	5,727
재사회화 교육	–	2,301	1,887	2,304	2,295	2,899
기타 자립지원	1,961	4,823	4,823	6,761	7,700	9,416

※ 정부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여비지급업무는 법무부교정국으로 이관되고, 생업조성금품 지급업무는 폐지됨.

2. 生活館 擴充 및 現代化

갱생보호사업 중 생활관에서의 무료숙식제공이 무의탁 출소자의 자활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아래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출소하였지만 돌아갈 가정이나 취업처가 마련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생활관 신축과 소규모생활관 구입을 통하여 생활관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생활관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2003. 2. 청주지부 목련생활관 신축· 개관, 2003. 10.인천지부 승학생활관 리모델링, 2004. 2. 제주지부 한라생활관을 신축· 개관한데 이어 2005년도에도 생활관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05. 2. 서울지부 환경개선 리모델링, 2005. 3. 춘천지부 신축· 개관, 2005. 4. 수원 · 안양출장소 신설 · 개관 및 서울북부지부 생활관 건물 매입, 2005. 5. 광주 순천출장소를 신설 · 개관하였고, 2006년도에는 광주 대

광 · 창원 진주출장소를 새로이 신설하는 등 생활관 중심의 갱생보호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113]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에 의뢰하여 2006. 8. 1.부터 같은 달 30.간 갱생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584명 기준 전수조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점수에서 100점만점에 89.2점을 획득하는 등 품질지수와 성과지수에서 전반적 만족함을 나타내는 90점에 육박하였다.[114]

3. 就業斡旋 機能의 擴大· 强化

출소자들의 체계적인 취업처 마련을 위해 "갱생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강화대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2006년도에는 취업상담 인원이 4,573명에 3,281명을 1개월 이상 취업인원시키게 되었으며, 취업알선 후원회수도 16개회에 384명으로 확대되었다.[115]

이와 함께 2002년 7월부터 실질적인 자립지원 등 갱생보호사업 강화를 위하여 공단 인터넷 취업지원센터(http://job.mojra.or.kr)를 개설 ·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는 같은 취업처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재범의 가장 큰 원인인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에도 이바지하였다.

113) 한국갱생보호공단, "다시 만나는 세상", 제32호 2006년 하반기, 6-13면.
114) 전게서, 14-15면.
115)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2007년, 29면.

제 5 장 更生保護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 1 절 任意的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Ⅰ. 任意的 更生保護制度의 問題点

1. 任意的 更生保護의 趣旨

갱생보호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적 지도와 물질적 원조를 하여 건전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응을 도와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내 보호활동이다.

즉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116]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보호활동을 말한다.

그와 같은 갱생보호의 보호사업은 현재 보호관찰소와 한국갱생보호공당,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그 갱생보호사업은 종전의 갱생보호법을 보호관찰법에 흡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법은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유권적, 재량적, 필연적인 강제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면서 갱생보호만은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를 시행하여 이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단일 법률에서 강제적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

11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되어 실시하지 않고 있음

다시 말해서 동법은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 국가가 권한과 필요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대표적 예로 영미의 Probation이나 Parole을 들 수 있다.

한편 동법은 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갱생보호(Voluntary After-care)를 실시하고 있다. 즉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갱생보호를 실시하고 그 갱생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의 개시규정을 고려한다면 동법은 갱생보호대상자에 임의적 갱생보호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폐지된 갱생보호법의 목적이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을 들고 있고(동 폐지법 제1조), 현행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도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그러므로 양법의 궁극적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으며 현행 갱생보호도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신청에 의하여만 갱생보호가 실시되는 임의적 갱생보호보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필요적 갱생보호의 도입을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기의 연장 문제라는 범죄자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유권적 갱생보호 조건의 가석방을 활용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現行更生保護의 運營實態

1) 宿食提供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는 연평균 약 12만 명이상으로 이중 8.1%에 해당하는 9,700여명은 무의무탁자로 숙식제공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출소하여 갈곳이 없거나 가족과 연고지는 있지만 여러 제반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 사회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는 당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바로 범죄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갱생보호사업에서 숙식제공업무는 무의무탁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소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고, 민간독지가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민간허가법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제외한 민간허가법인의 활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다 한국갱생보호공단조차도 생활관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이 극히 한정되어 연간 2,500명 정도만 숙식제공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년동안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한 숙식제공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숙식제공실적 및 예산[117]**

연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적(명)	2,254	2,336	2,495	2,491	2,680	2,745
예산(천원)	717,864	800,578	771,495	871,114	1,138,105	1,609,142

2) 保護實施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를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

117)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소자는 본인이 숙식제공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갱생보호사업 실시기관에 숙식제공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숙식제공보호신청을 받은 갱생보호사업 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보호의 필요여부를 결정한 후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호방법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숙식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숙식제공보호가 개시되면 갱생보호대상자는 자립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고 갱생보호실시기관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과 자조,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함은 물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생활관에 입소한 갱생보호대상자의 기능 및 적성을 조사하여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장에 취업을 시켜 근로에 의한 자활독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무의무탁출소자가 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게 되면 무의도식하며 무의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종 생활지도를 하고 종교인을 초청하여 심성순화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퇴소후의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은 약간의 본인 용돈을 제외하고는 본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예금하여 공단에서 관리해 주고 있으며 수시로 입금액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대행해주고 무호적자에게는 호적을 만들어 주며 생일자에 대해서는 매월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주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에게는 자매결연이나 의료지원, 유적지 견학 뿐 만아니라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지도와 원호 등 자립하여 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퇴소하여 건전한 일반시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리로 인하여 숙식제공보호를 받은 출소자들은 대부분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갱생보호공단에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에 14개지부가 있다.

14개지부에는 대규모 생활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전문화된 갱생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원지부에 가족생활관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Happy-Home Ⅰ~Ⅲ호를 운영하여 현재 3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전문생활관을 확대 운영하여 여자청소년생활관(송파와 안양출장소), 남자청소년생활관(은평과 순천출장소)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을 수용하고 있는 도봉출장소, 부산지부 산하의 울산출장소, 수원지부 산하에 여성출소자를 위한 출장소인 삼미여자생활관이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 시설현황[118]

구분 \ 지부	계	서울지부	인천지부	수원지부	춘천지부	제주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창원지부	광주지부	전주지부	제주지부
생활관 평수	1,930	321	109	295	82	97	211	203	218	101	117	134	42
거실 평수	639	106	36	76	34	30	50	82	87	33	53	39	13
방 수	173	32	10	21	11	8	11	18	24	9	15	10	5
적정 인원	610	109	36	76	34	30	45	61.	87	33	47	39	13
1인 점유평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 서울지부는 은평・송파・도봉출장소, 수원지부는 삼미출장소, 부산지부는 울산출장소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갱생보호생활관은 30명에서 60여명씩 수용하는 대규모 생활관으로 생활관 시설도 대도시 중심의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취업처 출퇴근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수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 연출에 애로가 있으며 수용자들 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3) 職業訓鍊

118) 한국갱생보호공단, “2006 갱생보호 평가”, 2007.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자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과 자영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직업전문학교와 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5-3] **직업훈련 프로그램119)**

단계별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대상자 선정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강화 ◦보호심사회를 거쳐 대상자 엄선 (연령, 학력 등 응시자격 등)	◦교도소별 사전면담 담당직원 지정
2단계	학원 입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과 협조체제 구축 ◦후원회 적극 활용 ◦관계 직원이 대동하여 관계개선	◦다양한 직종의 관련 학원 전체파악, 파일 유지
3단계	입교 후 사후관리	◦주~월단위 교육독려 및 격려 ◦중도탈락방지-애로사항, 교우, 지인, 주변환경 등 조정 ◦후원회원이 특별 지도관리	
4단계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정보 제공 ◦1차 실패후 대응책 - 자격증 취득시까지 교육보장	
5단계	취업 알선	◦취업알선 프로그램으로 이관 관리-자격증과 연계 취업알선 ◦인턴, 수습사원제 활용, 자영유도	

[표 5-4] **직업훈련 현황120)**

119)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2007. 8.
120)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2007. 8.

연도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명)	8,782	1,421	1,407	1,491	1,280	1,650	1,533
예산(천원)	3,040,338	492,079	480,013	479,954	460,952	569,400	557,940
1인평균단가	2,078	346	341	322	360	345	364

4) 就業斡旋 및 事後管理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그 동안 범죄예방위원, 취업알선후원회,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갱생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취업알선을 전개하여 왔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최근에는 취업알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취업알선 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에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5-5] **취업알선 현황[121]**

연도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명)	19,818	3,410	3,284	3,328	3,142	3,373	3,281
예산(천원)	279,363	19,364	46,410	48,796	47,147	58,826	58,820

[표 5-6] **사후관리 현황[122]**

연도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명)	30,628	4,607	4,208	4,423	4,668	5,727	6,995

5) 出所豫定者 事前面談

공단에서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단 각지부

121) 상게자료
122) 상게자료

소속 직원을 사전면담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매월 교정기관에 고정 출장토록 하여 출소예정자들에 대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성, 보호의 종류 즉, 숙식제공, 여비지급, 취업알선,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선행지도, 기타 자립지원(결연, 주민, 호적, 병역, 합동결혼 등)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면담직원은 면담시 수형자에 대한 성격,가정환경,교육관계,경력,직업관,인생관,자립의욕 등 사회정착을 위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갱생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출소전 사전면담시 갱생보호를 원치 않는 경우는 보호거부로 종결처리 된다.

[표 5-7] **출소예정자 사전면담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면담인원	17,002	18,004	18,994	20,286	20,174	18,313

6) 再社會化 敎育 現況

재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나 행정실무자 등을 초빙하여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재사회화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8] **재사회화교육 현황[123]**

연도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명)	15,013	2,301	1,887	2,304	2,295	2,889	3,337

II. 有權的 更生保護附 假釋放制의 導入

1. 論議의 背景

123)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2007. 8.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죄를 범하는데 용감해지는 것이 재범인의 성격이다.[124] 따라서 이러한 재범인의 성격형성을 방지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회에 융화시켜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이외에 사회내에서 선량한 사회인으로 갱생시켜 줄 수 있는 갱생보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범죄인을 교도소 시설내에 수용하였다가 출소시킨 후 사회의 선량한 한사람으로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재범, 상습범, 누범 현상을 증가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125]

그런데다 현대문화, 복지국가에서의 교도소의 주된 목적은 다만 응보형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수용,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인이 수용중 교화, 개선되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면 형의 집행 종료전이라도 석방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제도가 있는 것이다.[126]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이 출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다시 복귀,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출소후 사회에서는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위험인물시 되어 취직은 고사하고, 냉소와 냉대만이 있을 뿐이다.[127]

이런 결과 출소자에게는 사회에 대한 증오와 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됨은 십중팔구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자를 보호, 지도, 보도, 원호하여 사회에 융화, 복귀시켜 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

124) 鈴木昭一郎, 「更生保護の實踐的展開」, 日本更生保護協會, 1999, 37頁.
125) 常井善, 「更生保護と刑事政策」, 日本更生保護協會, 2002, 125頁.
126) 染田惠, 「犯罪者の社會內處遇の探求—處遇の多樣化と修復的司法」, 成文堂, 2006, 58頁.
127) 北澤信次, 「犯罪者處遇の展開—保護觀察を焦点として」, 成文堂, 2003, 58頁.

이제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갱생보호사업 전개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더구나 반드시 필요적으로 갱생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그 보호를 기피할 경우 갱생보호개시, 실시가 불가능하여 본래의 갱생목적인 범죄방지나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128)]

따라서 현행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권적 갱생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유권적 보호관찰대상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는 다음과 같고 필요적 유권적 보호관찰을 시행하고 있다.

①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자

이 대상자는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자이다.

이 대상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원호가 필요한 때에 보호관찰의 명을 받은 자이다.

②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

이 대상자는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

이 대상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의 명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의 명을 받은 자이다.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자・가퇴원자

이 대상자는 형법 제73조의 2 또는 법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가퇴원 된 자이다.

이 대상자는 가석방 된 자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나, 다만 성인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을 허가할 행정관청이 보호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가 된다.

④ 보호관찰부 보호처분자

이 대상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 받은 자이다. 이 대상자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128) 정진연 “전개논문” 15면, 갱생보호회 “한국갱생보호제도의 개선”(1971) 8.9면

할 때, 결정으로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129]을 받게 하는 처분을 받은 자이고(제2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130]을 받게 하는 처분을 받은 자이다(제3호).

⑤ 보호관찰부 위탁된 피치료감호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자이다.[131]

그 보호관찰의 담당자나 그 직무 집행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이다(동 법 제42조의 2).

따라서 위 자들은 위 조건하에서 강제적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⑥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가석방자

위 선고유예자는「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은 자이고,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이다(동법 제16조 제1항). 위 집행유예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받은 자이고, 다만 소년인 경우는 반드시 보호관찰의 명을 받는 자이다(동법 제16조 제2항). 위 가석방자는 성폭력범죄자로서 형 집행중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은 자이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6조 제3항).

이상과 같은 보호관찰은 모두 유권적 보호관찰제도로써, 이 제도들은 어디까지나 재범방지 목적을 위하여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관찰이고 강제적으로 지도, 원호함으로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함께 사회를 보호하는 필요적, 강제적 갱생보호제도인 것이다.

---

129) 단기보호관찰 기간은 6개월이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130)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3항)

131) 그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동법 제10조 제3항)

그렇다면 갱생보호도 보호관찰과 같이 공히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갱생보호도 단지 갱생보호대상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만 소극적으로 개시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필요성, 강제성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이 갱생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반드시 갱생보호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유권적 갱생보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교정시설내에서 직업훈련 등을 성실하게 받는 등 교정기관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자인 경우에는 형기내에라도 사회에 진출시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됨으로 인하여 겪는 재사회화 방해요인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형기내에 석방할 경우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 이들을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정시설내에서 직업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갱생보호기관내에서 의무적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석방하여 직업훈련을 계속 받게 하고 이러한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사회에 방출되었을 때 취업이 되는 등 재사회화에 성공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가석방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되면서 범죄자의 수감을 통한 교정비용의 감소도 이루어지고 범죄인에 재범방지로 범죄로부터 사회방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現行 假釋放制度의 意義와 運營現況

1) 假釋放의 意義

가석방은 불어로 Parol에서 유래되었으며 “명예를 건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분쟁에서 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전쟁포로를 석방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은 수형자들을 그들의 형기만료 이전에 조건부 석방하는 것으로서의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132)]

오늘날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

132) Howard Abadinsky,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1994, p. 205.

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고 이후 석방조건을 위반하여 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여 형기가 종료되었을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형상의 처분이다. 즉 가석방제도는 전체 사법제도의 한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한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형집행에 있어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토록 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며, 수형자의 개과천선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형을 집행하는 정기형제도의 결함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형집행을 실현하려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133]

2) 假釋放의 許可要件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요건은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형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72조에 의하면 성인 수형자[134]의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135]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년수형자[136]의 경우에는 가석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법 제65조에 의하면 무기형에 있어서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 있어서는 3년, 부정기

133)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 삼지원, 2001, p. 812.

134) 성인 수형자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시부터 성인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하여 성인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일반교도소로 이송되어 계속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로 본다.

135) 여기에서의 '형기'라 함은 1개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 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93헌마12).

136)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때는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 이 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에 있어서는 단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가석방의 실질적 허가요건이라 함은 형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장이 양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형자의 행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행형성적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분류급의 구분에 의하여 행형성적이 반영된 누진계급이라 하겠다. 한편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수형자가 수형생활 기간동안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137]가석방심사를 신청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형법 시행령 제153조 제1호에서는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를,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라함은 누진계급이 제1급인 수형자와 처우 등급 및 처우기준과는 별개로 급외자[138] 중 가급에 속하는 수형자도 의미한다 하겠으며,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수형자라 함은 누진계급 2급 이하의 수형자와 급외자 중 나급에 속하는 수형자를 포함한다 하겠다. 실무적으로는 형식적인 요건 외에 분류급 중 개선급과 기능자격취득 및 검정고시합격 여부, 범죄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보호관계, 가석방심사 시기 당시의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51조 제2항에서도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완전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재범의 우려가

137) 행형법 제51조 1항.

13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9조는 급외자를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임산부,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70세 이상인 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제4급의 자중 규율을 문란케 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고 하겠다.

3) 假釋放의 審査와 取消

가) 假釋放 豫備審査

행형법 제49조는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51조 제1항은 교도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서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139]은 분류처우예비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및 기타 수형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과 행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고 규정하여 이 분류처우회의에서 가석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선정은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수형자로서 개선급 A급 또는 B급으로 가석방심사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집행할 형기가 6월 미만인 급외자도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달에 나급 이상으로 변경되는 수형자도 심사신청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단기수형자도 가석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假釋放審査委員會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140]에서는 의결 및 결정은 재적위원 과

139) 수형자분류처우규칙(2002.7.18개정, 법무부령 제522호)
140)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1997. 1. 28. 개정, 법무부령 제444호)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 · 범죄관계 · 보호관계[141]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행형법 제51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조 3항). 따라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절차는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수용기관의 장이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신청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석방심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을 경과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석방을 심사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성인수형자의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형법 제7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되, 형기가 15년인 자는 그 잔형기가 먼저 경과하거나 부정기형인 자는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소년법 제66조).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된 자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141) 신원관계는 유전, 건강상태, 경력 및 교육정도 등 10개 항목을, 범죄관계는 연령, 형기, 범죄횟수 등 8개 항목을, 보호관계는 동거할 친족 · 보호자, 가정환경, 접견 및 서신횟수 등 8개 항목이 심사사항임.

판결이 확정된 때 가석방처분이 효력을 잃는 것이나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석방의 취소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가석방기간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4조-제76조).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가석방자를 재수용하여 잔형기를 집행하며 누진급별 처우에 있어서는 석방당시의 급별에 연계하여 처우하되, 누진계급을 1계급 또는 2계급 강급한 후 재심사하여 분류급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4) 假釋放의 運用現況

<표>는 최근 6년간 전체수형자 대비 가석방인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 후반기 경제위기적상황을 전후하여 가석방비율이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30%를 유지하고 있다. 가석방의 확대지침으로 가석방 비율은 높아졌으나 형집행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 5-9] 연도별 가석방율[142)]

연도 구분	전체석방인원	가석방자	
		인원	비율(%)
2000	19,774	8,890	31.0
2001	30,387	9,393	30.9
2002	31,092	9,605	30.9
2003	30,175	10,113	33.5
2004	30,907	11,218	36.2
2005	230,922	10,520	34.0

자료: 법무부 교정국

3.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必要性과 豫想效果

142) 법무부 교정국, “2006년 가석방 자료”, 2007.

1) 導入必要性

출소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갱생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143]

첫째, 출소 후 현실 사회와의 괴리이다.

출소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의 모든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고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수용될수록 더욱 심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반작용에 의한 심한 좌절이다.

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불신과 냉대는 그들의 활동을 위축받게 하여 그 결과 전과자만의 비행적 하위문화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재범을 하게 되면 전과자라는 사회의 낙인화는 더욱 가중되고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 설령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하려는 출소자의 의욕을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의 거부반응은 크게 작용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144]

셋째는 출소자의 심리적 갈등이다.

출소자들은 흔히 스스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며 자기를 사회의 이단자 또는 낙오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심리적 지체(Psychological Lag)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질적 원조 이외에도 심리지도가 필요하게 된다.[145]

넷째는 출소 후 생계유지와 주변의 유혹이다.

출소 후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면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황하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 경우 원호지도가 불가능할 때에 그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재범의 유혹에 빠지게도 된다. 그리고 출소자들의 주변에는 과거의 비행동료나 교정시설의 동료들이 모여들어 유혹의 손길이 작용하기도 한다.

---

143) 정진연, 전게논문, 7면.
144) 森木益之 外編,「刑事政策講義」, 有斐閣, 1994, 11頁.
145) 이정수 · 신의기 · 김효정, 전게 논문, 19면.

결과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나 갱생보호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출소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료라고 생각해 줄 때 비로소 효과적인 갱생보호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연간 수만여명 이상에 달하는 출소자들의 수를 감안할 때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사회로 환원되고 따라서 재범화 현상이 방치된다면 우리사회의 평화와 안정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 의미에서 갱생보호활동은 재범방지를 위한 우리사회의 궁극적 처방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으로서 형사정책상 필요 불가결한 활동이라 하겠다.[146]

2) 豫想 效果

유권적 갱생보호부 가석방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첫째는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갈수록 범죄인에 의한 재범율이 높아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147]

이는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업과 재범율이 관련성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148]

둘째, 가석방제도의 실효성 확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석방제도가 법제화 된지는 오래 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가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의 재범우려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2005년 2월 가석방된

---

146) 상게 논문.

147) 일본의 경우 2005. 12. 31. 기준으로 재범율은 49.9%를 나타내고 있다 (http://www.kantei.go.jp/jp/singi/hanzai/dai7/7siryou3_1.pdf#search='再犯').

148) 山岸信雄, 前揭論文; 綱野光明, “フランスにおけゐ再犯防止策”, 「レファレンス」,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006. 6.; 吉野智, 前揭論文; 小西由浩, “新しいリスクとしての犯罪-犯罪豫防と警戒原則-, 「Japanese Journal of Sociological Criminology」, 31号, 2001.

자가 유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가석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일본국회에서 갱생보호법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가석방자를 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차례에 걸친 갱생보호법안 관련자 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셋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일이 직업교육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직 전문성과 현대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정시설내에서 직업교육과 갱생보호기관에서의 직업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 2 절 更生保護事業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I. 關聯法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問題點

1) 關聯法規의 統合에 따른 關係機關間 業務協助體系 未整備

우리나라는 1995년 유사법률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갱생보호 관련 법률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사회내 처우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갱생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하게 된 것은 갱생업무에 관한 담당부서도 국가기관에서는 법무부 보호국이 관할하지만 실질적인 일선에서의 갱생보호 관련 업무는 갱생보호공단이 전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수직적인 체계의 일관성 면에서는 어

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갱생보호공단의 각 지부와 법무부 보호국 산하에 있는 각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 사이에 업무연계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 現實性이 缺如된 公團의 組織과 基金

갱생보호공단에 갱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도 공단의 기구를 계속 축소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공단의 전직원은 91명인데, 공단에서 처리한 갱생보호에 관한 실적은 총 23,277건으로 개인당 보호업무의 처리건수가 평균 257건이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로 살펴보면 갱생보호업무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은 계속적인 추수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한 업무임에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양적인 처리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갱생보호업무에 상당한 질적인 수준과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갱생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4-89조에서 공단은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 재원은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법률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범죄인에 대한 갱생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의 출연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갱생에 대한 의식수준이 선진국수준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국고보조금위주로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3) 民間自願奉仕者의 參與未洽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범죄인에 대한 재사회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갱생보호제도에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민간인의 참여는 범죄인의 갱생보호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이다. 왜냐하면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데, 이의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49]

이는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건설의 실천과 관계가 있지만 특히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는 일반인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생의 보람과 자기실현의 의미를 갖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에의 민간인 참여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우리 사회를 밝고 안전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참여 독려를 위한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2. 改善方案

1) 關聯機關과 協力 및 關係法의 改正

1989년 7월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처음에 소년범에게만 시행되다가 다행히 지금은 전 성인범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자 복지증진과 재범방지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무의 과중만큼 직원의 증원이나 예산의 증액은 아마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다만 1995년 그 동안의 갱생보호 관련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양자간의 차별, 구체적으로는 갱생보호공단의 상대적 경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된다.

---

149) 山岸信雄, “改善更生と再犯防止-更生保護制度の見直し-”, 「立法と調査」, 参議院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 261号, 2006. 10., 33頁.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는 가석방, 가퇴원자 등과 같이 시설내 처우를 받다가 사회내처우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 석방된자인 출소자가 바로 갱생보호대상자로 되므로 처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의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관계는 그 보다 더 긴밀하지 않으면 안된다.[150]

또한 비록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이고 갱생보호공단은 엄격한 의미에서 비정부기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법무부장관이 감독하며 그 보조기관이 보호국장이라는 점도 양자가 협력해야 할 당위적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1]

따라서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관계는 그 일체성과 함께 각자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두 기관은 종속관계 ·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152]

두 기관의 협조로 광의의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우선 법률의 명칭이다. 현재의 법률명이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함이 옳다. 혹은 일본처럼 갱생보호를 광의로 해석하고 임의의 갱생보호나 보호관찰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여 차라리 갱생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153]

그 외에도 법무부 훈령 제363호 규정 12-14조에서 범죄예방지도협의회 역할 특히 범죄예방위원과 관련된 역할에 있어서 갱생보호공단이 보호관찰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있는 점과 법의 해석에 있어서 선행지도(62조) 등과 같은 조항에서는 공단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석을 요하는 곳도 있다.[154] 이 모든 것을 개정함이 옳다고 본다.

---

150) 박재윤,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6호, 1997, 7면.
151) 상게 논문.
152) 정진연, “갱생보호에 관한 연구”,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5호, 1997, 17면.
153) 이태언, 전게 논문, 18면.
154) 박재윤,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8면.

2) 公團의 組織整備와 基金造成

2005년도 공단의 총실적은 23,277건이고 직원은 본부 직원을 합쳐 91명이다. 다른 행정적인 일 모두를 제외하고도 보호업무만 개인당 평균 257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 보호업무 중에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은 계속적인 추수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호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질적인 수준과 전문성을 요하나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원 140명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150명 이상의 증원을 건의하고 있고[155] 그 외 갱생보호사업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모두 갱생보공단의 직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15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소자가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으면 현재 60%에 육박하는 재범율을 상당 폭 낮출 수 있다. 때문에 출소자의 10% 정도만이 갱생보호공단의 서비스를 받는 비율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임의적 갱생보호를 보호관찰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독형법 제68조에서는 만기석방자에 대한 의무적 갱생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157]

장기적으로는 의무적 갱생보호제도가 출소자의 자율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갱생보호공단의 조직 확대와 갱생보호서비스의 질적 상승과 양적 확대를 통해서 출소자와 공단과의 만남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4-89조에서 공단은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 재원은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민간

---

155) 김수길,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법과 정책」, 한국법정책학회, 제2호, 1996, 71-72면.

156) 이태언,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18집, 1998, 19면; 정주영, ”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개선적 고찰“,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8호, 1997, 13면; 이정수, 신의기, 김효정, 전게 논문, 267면.

157) 정주영, 전게논문, 8면.

의 자발적인 성금의 출연에 대한 호응이 부족해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단 운영의 재원이던 기금과 자체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이유와 갱생보호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강조하였다. 갱생보호사업은 다른 국가사업에 앞서 우선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예산의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금확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기금 출연 등을 포함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단은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제에 갱생보호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공단의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한 공단의 보호사업 지정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그에 소요되는 인력의 확충을 특별히 제안하고자 한다.

3) 民間 自願奉仕者 參與의 活性化

갱생보호사업에의 민간인 참여는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데, 이의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간인의 갱생보호에의 참여는 전술한 범죄의 사회성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앞장 서 참여해야 하는 일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무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갱생보호에의 참여의 거부는 물론 그들과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는 현실에서 이에의 참여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마인드 없이는 불가능하며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자기희생적 행위이다.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출소자 사전면담, 출소자 취업알선, 숙식제공자 위문 격려, 빈궁한 출소자의 생계비보조 등의 지원,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연, 그리고 출소자 선행지도 등이다.[158)]

이렇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갱생보호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출소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밝고 안전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안이다.[159]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경영자 등이 자원봉사자 및 직업훈련의 지원자로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교류기회를 통하여 갱생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II. 更生保護公團 運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問題點

1) 豫防的 觀察保護의 缺如

출소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지 즉 상담과 취업을 보장될 경우에는 재범을 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60] 그러므로 출소자들에게는 먼저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출소자들도 사회적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며 또한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술이나 마약 등에 빠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재범억제요인으로서의 심리적 상담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행형에서는 시설내 처우를 위한 입소시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검사 등을 행하고 있으나 출소시에는 이러한 검사 등을 통한 갱생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부적응(maladjustment)과 같고 따라서 치료는 가족정향적 원조이어야 한다.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after-care서비스를 받으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아상(self-image)를 바

158) 김정희, “갱생보호제도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17호, 2000, 9-11면.

159) 柿澤正夫, “國民の期待ににたえられる更生保護の實現に向けて”, 「更生保護と犯罪豫防」, 日本更生保護協會, 第147号, 2006. 10., 13頁.

160) John W. Pearson & Gary G. Taylor, Adult Probationer Need Survey, American Justice Institute. 1973. p. 46.

꾸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정향적 원조가 예방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다.[161]

따라서 관찰보호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찰보호의 대상이 출소자 개인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확대하여 출소자의 가족에게까지 관찰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선행지도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사후지도적 성격만을 띠고 있어서 문제이다.

2) 量的 收容保護의 指向

갱생보호공단에서는 보호관찰의 전면 실시 이후 수용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용보호의 기간은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질적 수용보다는 양적 수용에 치중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에 있어서는 전체적 처우보다는 개별적 처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 및 연고가 없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그 개인의 특성이나 자립정도를 고려하여 수용기간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의존성이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특히 가족이 없는 출소자들이 명절 등에 며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써의 활용을 위해서도 수용조건과 기간에 대한 각지부에 대한 재량권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수용보호사업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용보호 생활관의 현대화와 함께 갱생보호 전문가에 의한 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經濟的 支援 必要

출소자들의 갱생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국민 개개인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공단, 보호위원 나아가 국가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seed money)으로 실시되

161)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7면.

었던 생업조성금제도가 폐지된 것은 잘못이다. 이 종잣돈은 금액은 비록 적을지라도 출소자들에게는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 되어 그들의 반사회적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全體性的인 更生保護制度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절멸시킬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범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데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범죄가 사회악이기는 해도 범죄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 범죄는 사회의 기생적 요소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일부분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박멸하겠다는 등의 말은 물론 구호로서 강조되는데 불과하겠지만 이는 자칫 비상하고 비정상적인 대책을 합리화시켜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162]

따라서 범죄대책은 인류가 범죄와 투쟁해 온 그 동안의 경험과 역사의 교훈, 과학의 성과와 현대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보편적 원리에서 그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163]

앞서 설명한 갱생보호공단의 보호사업인 관찰보호, 생업조성금 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수용보호 등은 1960년 이후부터 출소자 보호사업의 핵심적 내용이고 이것은 출소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성이 나름대로 입증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보호방법이 계속해서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보호방법도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져야 공단의 발전을 통한 출소자의 복지증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갱생보호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이제까지 해오는 출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보호 프로그램보다는 그 범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갱생보호가 요구된다.

2. 改善方案

1) 豫防的 觀察保護의 實施

---

162) 박재윤, “범죄대책의 올바른 방향”, 「갱생보호」, 제1권, 1996, 7면.
163) 상게 논문, 6면.

현재의 선행지도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사후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관찰보호 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 오랜 세월동안 실시해오던 정기적으로 직원과 보호위원이 출소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주는 관찰보호의 부활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에서도 출소자의 심리적 지지는 재범의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출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과 상담이라고 한다.[164] 따라서 출소자들의 심리적 갈등해결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출소자들은 소속감을 원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을 갈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술이나 마약 등에 빠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재범억제요인으로서의 심리적 상담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부적응(maladjustment)과 같고 따라서 치료는 가족정향적 원조이어야 한다.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after-care서비스를 받으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아상(self-image)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정향적 원조가 예방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다.[165]

따라서 관찰보호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찰보호의 대상이 출소자 개인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확대하여 출소자의 가족에게까지 관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자(재소자 혹은 출소자)의 가족은 그 범죄의 2차적 간접적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부조와 지원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166] 또한 가족단위의 서비스 및 처우는 범죄자 개인의 교화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범죄를 야기시키게 된 가족내적 결함을 치유하고 범죄의 세대간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64) John W. Pearson & Gary G. Taylor, Adult Probationer Need Survey, American Justice Institute. 1973. p. 46.

165)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7면.

166) 한인섭,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97면.

또한 보호의 대상을 꼭 어떤 식으로든지 형법 및 소년법 등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술한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폭력, 가출,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의 발전에 관하여도 연구를 해야 한다.

전문적 관찰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갱생보호의 대상을 출소자 가족으로 확대한다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은 법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갱생보호공단이 출소자를 위한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 收容保護의 質的 水準 向上

보호관찰의 전면 실시 이후 갱생보호공단의 업무가 수용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보호의 기간이 최장 1년에서 2001년부터 9개월로 축소되었다. 의존성이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제하에 가족 및 연고가 없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개별적 처우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수용기간에 대한 각지부의 재량권이 신장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특히 가족이 없는 출소자들이 명절 등에 며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써의 활용을 위해서도 수용조건과 기간에 대한 각지부에 대한 재량권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지부의 생활관이 우리나라 다른 사회복지 보호시설의 발전의 수준에 맞게 현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출소자를 위한 가족생활관의 건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중에는 지체장애인 노약자, 마약 및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형집행정지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갱생보호 전문생활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의 갱생보호 생활관은 근로

에 의한 자립갱생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의 시설인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까지도 갱생보호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수용보호사업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생활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전문인력과 전문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167]

3) 生業造成金의 復活과 經濟的 支援策 强化

폐지된 생업조성금은 다시 부활되고 액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생업조성금은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seed money)이 될 수도 있으며 출소자에 대한 공단, 보호위원 나아가 국가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다. 당연히 그것은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 되어 그들의 반사회적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출소자와 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생업조성금의 지급에 그치지 말고 다른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무주택 출소자 가족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 등이다.

4) 出所者의 特性을 考慮한 프로그램의 新設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절멸시킬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범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데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범죄가 사회악이기는 해도 범죄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 범죄는 사회의 기생적 요소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일부분이라고 까지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박멸하겠다는 등의 말은 물론 구호로서 강조되는데 불과하겠지만 이는 자칫 비상하고 비정상적인 대책을 합리화시켜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168]

따라서 범죄대책은 인류가 범죄와 투쟁해 온 그 동안의 경험과 역사의 교훈, 과학의 성과와 현대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보편적 원리에서 그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169]

앞서 설명한 갱생보호공단의 보호사업인 관찰보호, 생업조성금 지급, 직업

---

167) 정진연, “갱생보호에 있어서의 숙식제공”, 「갱생보호」, 제10호, 1998, 7-12면.
168) 박재윤, “범죄대책의 올바른 방향”, 「갱생보호」, 제1권, 1996, 7면.
169) 상게 논문, 6면.

훈련, 취업알선, 수용보호 등은 1960년 이후부터 출소자 보호사업의 핵심적 내용이고 이것은 출소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성이 나름대로 입증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보호방법이 계속해서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보호방법도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져야 공단의 발전을 통한 출소자의 복지증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공단 차원의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운영이다. 현재 소년원은 대부분 학교식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력도 인정을 받고 있거나 강도 높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을 퇴원하거나 가퇴원 후 그들이 입소 전 다니던 학교나 새로운 학교에로의 전학 등을 통한 학업의 연장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학이 된다고 하여도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또 한번 더 좌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업교육의 중단도 있을 수 있다. 대안학교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가급적 통합의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나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학교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특성을 살려 그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연마시켜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Winners circle program이 있다.[170] 얼마 전에 우리사회에서도 소년원 출신 몇 사람이 모여 벤처기업을 창립했다는 보도가 있었었다. 그리고 비행 혹은 일반 청소년들이 장래의 희망으로 즐겨 꼽는 Back dancer 등과 같이 특히 사법처리를 거친 청소년의 개성과 특기를 고양시킬수 있는 광의의 개념의 대안학교의 설립 등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제 3 절 職業敎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70) 김용진,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외국의 소년 수용제도 연구」, 법무부, 1990, 74-77면.

I. 職業敎育의 問題點

1. 現代的 職業과 맞지 않는 職業敎育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도 범죄자의 갱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기관이나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로 내보내졌을 때 범죄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직자 등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되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2. 職業訓鍊 네트워크 未構築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수형자나 출소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수형자들을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보지 않고 직업훈련의 취약계층이라는 인식 하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수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수형자나 출소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교정기관이나 갱생보호기관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직업교육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과정을 설정한다든가, 즉 사회내에서 그 직업의 필요성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또는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투입비용에 비하여 산출비용은 그리 많지 않게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직업교육은 사회로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실습시간이 부족하여 사회

에 진출하였을 경우 재실습교육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就業斡旋 프로그램

출소자의 재사회화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재범의 억제원인으로 직장의 안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다음은 마약 사용 여부와 전과횟수라고 하여 직장의 여부와 직업의 안정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소자의 재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으나[171] 그들의 취업은 사회적 낙인 등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보험을 활용하는 공단 차원의 신원보증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단 직원과 보호위원들의 건전한 노동관과 제도적 지원이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改善方案

1. 適性과 時代에 맞는 職業敎育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자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과 자영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직업전문학교와 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時代와 適性에 맞는 職業敎育의 必要性

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 활동에 필요한 직업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이 실제로 실시되는 목적은 그 당시의

171) David A. Prichard, "Stable Predictors of Recidivism: A Summary", *Criminology*, Vol. 17, p. 18.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개 근로자의 생계해결, 생활안정, 사회안정, 복지사회구현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호구지책에 급급하던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생계해결 수단의 하나이던 것이 70년대 말까지는 경제개발추진계획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공급원으로서 기능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80년대의 직업훈련은 과거와 같은 생계해결이나 생활안정과 병행하여 사회 안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훈련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역할수행의 단계를 거쳐 대망의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첨단직종으로 대변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아직까지도 생계해결을 위한 직업보도에 머물러 직업훈련의 목적이 고용 가능한 최소한의 직업능력 부여에 멈춰있다 하겠다.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직종을 첨단유망 직종 즉, 컴퓨터 산업디자인, 애니메이션, PC수리, 컴퓨터선반, 자동차정비, 중장비등 과 저학력자 대상 직종인 제과· 제빵, 이·미용, 요리, 도배, 자동차 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확대하고 있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대상자들은 신분상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거나 동일사업장에서 취업을 같이 하는 것을 다른 훈련생이나 근로자가 꺼려 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이나 기업들 역시 이들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 하겠다. 이들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과 근로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거국적 대열에 동참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들을 기능인력으로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출소자들을 위해 공단내에 출소자 전용 직업훈련소 설치가 절실하다 하겠다. 그 동안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0] **직업훈련 프로그램172)**

172) 한국갱생보호공단 제공자료, 2007. 8.

단계별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대상자 선정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강화 ○보호심사회를 거쳐 대상자 엄선 (연령, 학력 등 응시자격 등)	○교도소별 사전면담 담당직원 지정
2단계	학원 입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과 협조체제 구축 ○후원회 적극 활용 ○관계 직원이 대동하여 관계개선	○다양한 직종의 관련 학원 전체파악, 파일 유지
3단계	입교 후 사후 관리	○주~월단위 교육독려 및 격려 ○중도탈락방지-애로사항, 교우, 지인, 주변환경 등 조정 ○후원회원이 특별 지도관리	
4단계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정보 제공 ○1차 실패후 대응책 - 자격증 취득시까지 교육보장	
5단계	취업 알선	○취업알선 프로그램으로 이관 관리-자격증과 연계 취업알선 ○인턴, 수습사원제 활용, 자영유도	

2. 職業敎育 네트워크 構築

우리나라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법무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직업훈련 관련 행정부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열린 네트워크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범정부적 차원에서 직업훈련정책을 수립하여 수형자들을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보지 않고 직업훈련의 취약계층이라는 인식 하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수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에 관련된 교재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강사들의 재교육과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와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은 매우 빠르게 불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 직종의 개발, 과정의 내용적인 변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자격증 취득 후 훈련 향상 기회제공과 더불어 훈련에 필요한 효과적인 교수기법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成果測定技法開發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훈련성과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형자의 직업교육이 자격증 취득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자격증 취득률이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률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율을 낮추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되지 아니한다. 즉 자격증 취득 자체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업 훈련 수료생 중 대다수가 초급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격증 취득과 재범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시장성 있는 기술 습득을 통한 사회복귀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재입소율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즉 교정교육과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재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범 방지라는 차원에서 재범과 재입소의 실태에 관한 측정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직업교육을 수료한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이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출소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재입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예에서 살펴보았던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서 보면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이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소율의 감소는 직업훈련의 성과와 더불어 개인의 경제·사회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선발함에 있어 특정계층에 편향되지 않고 조사대상의 무작위적 추출방법이 사용되어져야하며 훈련생들이 출소 후에 재범 또는 재입소에 관한 정보가 관련 기관 사이에 유기적으로 공유되어져야 한다.

2) 職業敎育方式의 改善

직업훈련은 훈련생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고 태도변화를 유발하여 교정시설내에서 수형생활을 함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류처우제도와 연계하여 수형자들의 태도변화와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류처우는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수형자에 상응하는 개별적인 처우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의 동기와 회수, 생육과정, 교육정도, 가정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업종목과 훈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훈련기간 중의 수형 태도 및 출소 후의 재입소 가능성 등을 관찰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정시설내에 직업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출되는 출소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산업체가 바라는 요구 수준에 부합되지 않아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산업체에서 재교육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인력이 모자라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 특히 직업교육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지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종업원의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직업교육이 중소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려면 직업교육의 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가) 問題解決, 實踐學習, 課題解決 中心의 授業 展開

수업의 전개는 대상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 당면하는 문제를 원리와 이론에 맞추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해결 학습법(problem solving method)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제 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을 실시하고, 맡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스스로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안학습법(project method)을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방법들을 통해 대상자들은 배운 원리와 이론을 체득하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갖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배어 교육을 수료한 후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해결 학습법은 대상자의 주체적인 사고활동을 가장 존중하는 듀이(J, Dewev)의 진보주의적 교육철학에 기초해서 창안된 학습지도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한 학습에 있어서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내용을 주입 또는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적 활동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평가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지성적 활동이 중요하며, 지성적 활동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에 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창조하도록 사고의 훈련을 중시한다. 사고는 창조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산업기술을 개발·창조하는 능력의 형성을 학습의 목표로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함이 좋은 것이다.

구안학습법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산업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 방법은 20세기 초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새로운 공작교육의 방법으로 연구 ·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의 공작교육은 모형을 제시하고, 이것을 모방함으로써 작품을 만들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 일정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것을 제작・완수한다는, 이를테면 학생 자신의 자주적이고 능동적 활동에 의한 일련의 학습활동의 과정을 제창한 것이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의 농업학교에서는 학생이 가정에서 실제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서 야채의 재배와 가축의 사육을 스스로 실천하는 작업적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홈 프로젝트(home project)라고 불렀고 학생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재배 · 사육과 농업경영의 기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발견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의 기회가 부여되고 학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결국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가능해진다.

나) 敎育目的 및 內容 등을 考慮한 다양한 敎育方法의 適用

교육방법은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그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에는 특정한 교육방법이 적절하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적성과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목적, 필요성, 유형, 내용, 인원, 시간, 장소(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필요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교육방법의 선정에 앞서 적절한 교수 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수가 대상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영역이 단순한 사실(fact)인지, 지식을 조직화하기 위해 유사한 아이디어를 집단화(grouping)하는데 쓰이는 개념(concept)인지,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리(Principle)나 규칙(rule)인지, 일의 절차(procedure)인지, 태도(attitude)인지 등을 판단한 후 그에 맞는 교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영역(목표)에 따라 교수전략을 수립한 후 실제 교육장면에서 가장 적합한 전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에 따라 적절한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교육목적별로 분류된 교육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정할 때는, 교육목표가 시사하는 행동 목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방법인지, 지역적 · 시대적 · 사회 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적합한 방법인지, 가능하면 수업참가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수업을 받는 사람과 직업교사 간, 또는 수형자들 상호간에 감정이 교류될

수 있는 방법인지, 수강자의 수에 적합한 방법인지,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비용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전개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敎育對象者의 知的인 能力을 충분히 고려한 敎材開發

대상자들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고 개인차가 반영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이 더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듈(module)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듈이란 어떤 학습주제 또는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달성해야하는 몇 가지 잘 서술된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활동 여부를 알아보는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고안된 교수-학습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모듈은 수업이 자율적이고, 개별화되어 있고, Package화 되어 있으며, 학습경험과 학습목표를 포함하며, 학생 스스로가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實驗·實習의 效果的인 運營과 改善

직업 교육에 있어서 실험・실습은 대단히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실험・실습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실습인원에 맞도록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실습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실습을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 및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현행 주어져 있는 실습시간이 적합한 것인지 재검증해 본다든가 혹은 학생들에게 사전 학습과제 등을 통해 실험 · 실습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실험·실습후에 체계적인 실기 테스트 등을 통해 기능의 숙달 정도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든가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실험・실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적극

적으로 실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험·실습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어떤 실습시설이나 기자재는 너무 비싸 대상자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고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며 농장의 경우 생산물 판매대금을 높이기 위한 경영 중심으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진정하고 싶은 실험・실습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와 협동하여 고가의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관리하며, 갱생보호기관의 농장 운영을 경영 중심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농장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농장운영 예산과 갱생보호기관의 운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실습시간의 확충이다. 직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란 학생들이 어떤 기능(skill)을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숙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습을 위한 시간이 대상자의 숫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 단순히 교과상에 편성된 실습시간의 부족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습을 준비하는데 투자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실 실습의 효과는 실습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실습 후에 실습한 내용을 정리하는데서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실습시간 마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습다운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의형식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갱생호보호기관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최신 실습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실습기자재가 있다 치더라도 너무 노후화 되어 실습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직업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바람직한 학습원리는 실천학습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법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내용이라기 보다는 지도하는 교수이다. 특히 수형자들에게 직업에 대한 포부를 키워주고 학습의

욕을 높이는데 교수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직업교육 방법의 문제점은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이다. 교수-학습 방법이 갱생대상자의 학습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교수방법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학습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즉, 실습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강의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사실 강의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험, 실습 기자재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직업교육 방법의 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직업교육 방법의 문제점은 산학협동체제의 미비로 인한 현장실습의 부실을 들 수 있다.

3. 職業訓鍊 및 就業斡旋 프로그램의 强化

출소자의 재사회화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재범의 억제원인으로 직장의 안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다음은 마약 사용 여부와 전과횟수라고 하여 직장의 여부와 직업의 안정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소자의 재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으나[173] 그들의 취업은 사회적 낙인 등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보험을 활용하는 공단 차원의 신원보증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단 직원과 보호위원들의 건전한 노동관과 제도적 지원이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출소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범죄자에게도 사회에서 냉대하지 않는다는 포용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정기관이나 갱생보호공단이 중소기업경영자와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 할 수 있는 방법의 도

173) David A. Prichard, "Stable Predictors of Recidivism: A Summary", *Criminology*, Vol., 17, p. 18.

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싱가폴처럼 갱생보호공단에서 직영하는 출소자 전용 종합직업훈련소나 사기업과의 합작사업 등 공단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작업장 프로그램의 마련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174] 전술한 보호작업장과 함께 이는 공단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174) 정봉영,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 「갱생보호」, 제20호, 2000, 12-15면.

제 6 장 結 論

경제적 빈곤은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은 못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인의 갱생을 촉진하고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사회내처우제도를 대폭 재정비하여 갱생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도 전과자의 냉대풍조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갱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응보적인 측면에서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법무부를 비롯한 갱생보호공단 등 범죄인의 갱생보호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공단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갱생보호사업의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갱생보호제도는 범죄 및 비행의 전과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에 대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범죄자의 보호사업일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는 범죄자가 생태적, 유전적 소질에서 범죄가 초래되었든 환경적 요인에 의했든, 학습에 의한 범죄이든 그것은 영구 인격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책임에 의하여 원조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상대적 균등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범죄자의 갱생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회적응에 애로를 보이는 상대적 약자인 범죄자로서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출소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임에 의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은

전체 공동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타당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의 부적응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의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몇 명의 출소자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식의 산술적이고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갱생보호의 대외적인 가치상승은 많은 갱생보호 수혜자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응 갱생자립자를 탄생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소자들에게 명분 살리기식으로 현실성 없는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교정 전반, 특히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정책을 보다 차원높게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첫째, 유권적 갱생보호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제도는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실시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석방자의 재범우려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자에게 근로를 통하여 재사회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국가의 관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석방 신청자에게 유권적 갱생보호부 가석방 처분을 내림으로써 근로를 통한 재사회화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다면 현재 법규상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가석방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갱생보호공단은 국가의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가장 받지 못하는가 하면, 나아가 사회적 냉대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는 출소자를 위하여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주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특히 犯罪孵卵期間 혹은 범죄예방을 위한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라고 불리는 출소 후 2-3개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재범의 예방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교정분야 학자와 교정관계인 그리고 범죄예방위원과 일반인 모두가 공단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갱생보호사업의 체계를 정비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정책적 결단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석방된 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사회의 범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관계자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출소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몇 명의 출소자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식의 산술적이고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자들의 상당수는 자력으로 자립갱생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원조를 하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경제적 빈곤이 재범의 절대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누범자들은 경제적 빈곤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려자의 대다수는 생활수준이 하류계층이고 근로의욕을 상실하였거나 노동을 천시하는 무위도식과 나태심의 소유자도 많으며 또한 그들은 극히 적은 소지금을 가지고 출소함으로 의식주 등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원조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또는 기본적 생계유지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입

장에 처했을 때에는 그 빈곤상태로 인하여 바로 방황하게 되고 이 때 주변의 전과자인 교도소동료들이 유혹의 손길이 뻗쳐 다시 범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갱생대상자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 직업교육 지원이다. 이제까지 검토하여 본 바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성공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재범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시대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그 직업교육을 받은 갱생대상자들이 취업해서 그 교육을 활용하는 율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갱생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정처우나 갱생처우에 있어서도 처우의 개별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직업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갱생보호대상자의 적성이 아무리 맞는 교육이고 그 대상자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에 내보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로 인한 범죄예방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갱생보호의 대외적인 가치상승은 많은 갱생보호 수혜자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응 갱생자립 자를 탄생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소자들에게 명분 살리기 식으로 현실성 없는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합된 범죄예방위원도 민간 자율성 제고라는 통합 명분에 맞게 민간단체인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민관의 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실질적인 보호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갱생보호제도는 범죄 및 비행의 전과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에 대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Ⅰ. 國內文獻

김기두. “갱생보호의 이념과 실천”.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17호, 1971.

김기현. “재범의 원인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9호, 1999.

김수길.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법과 정책」. 한국법정책학회. 제2호, 1996.

김수길. “누범방지에 관한 연구”. 「제주논총」. 제주대학교. 제1집, 1993.

김용진.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외국의 소년 수용제도 연구」. 법무부, 1990.

김정희. “갱생보호제도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17호, 200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윤호. 「교정학개론(개정판)」. 박영사, 2002.

박재윤.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6호, 1997.

박재윤. “범죄대책의 올바른 방향”.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공단. 제1권, 1996.

박철현.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신상철. “수형자 사회복귀의 효율적 발전방향”. 「교정문집」. 제1집, 2000.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8.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 삼지원, 2001.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예병순. “제1회 전국 갱생보호 전진대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갱생보호공단, 2001.

유기용. “수형자 사회처우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유병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갱생보호」. 제21호, 2001.

유인학. “한국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양논문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8집, 1974.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 1991.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수성. “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세미나, 1989.

이정수・신의기・김효정.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태언.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18집, 1998.

장중탁.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이념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정봉영.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 「갱생보호」. 제20호, 2000.

정주영.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개선적 고찰”.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8호. 1997.

정진연. “갱생보호에 관한 연구”. 「갱생보호」.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제5호, 1997.

———. “갱생보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호, 1995.

———. “갱생보호에 있어서의 숙식제공”. 「갱생보호」. 제10호, 1998.

———.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교정연구」. 제23호, 2004.
조기룡. “재통합모텔에 기초한 교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인섭.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한인섭.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허주욱.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8호, 1998.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3.
홍봉선.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청소년」. 제13집, 1997.
홍봉선.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14호, 2002.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1.
홍봉선・남승규・남미애.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제51호, 2002.
홍봉선・남상철. “한국 교정복지 구현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32호, 2006.
법무부 교정국. “2006년 가석방 자료”, 2007.
법무부 교정국. 수용자 정보화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2007. 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한국갱생보호공단. “2006 갱생보호 평가”, 2007.
한국갱생보호공단. “다시 만나는 세상”. 제32호, 2006년 하반기.

Ⅱ 外國文獻

1. 日本文獻

綱野光明. “フランスにおける再犯防止策”. 「レファレンス」.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006. 6.

吉野智. “再犯防止はスクラムを組んでー英國における犯罪者處遇のパートナーツップー”. 「刑政」. 17巻 11号, 2006. 11.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2版)」. 第4巻. 青林出版社, 1999.

鈴木昭一郎. 「更生保護の實踐的展開」. 日本更生保護協會, 1999.

立岩眞也. “監視と處罰：監獄の誕生” ,「社會心理學評論 6」. 新潮社, 1987.

北澤信次. 「犯罪者處遇の展開—保護觀察を焦点として」. 成文堂, 2003.

山岸信雄. “改善更生と再犯防止ー更生保護制度の見直しー”. 「立法と調査」. 參議院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 261号, 2006. 10.

森木益之 外編.「刑事政策講義」. 有斐閣, 1994.

常井善. 「更生保護と刑事政策」. 日本更生保護協會, 2002.

小西由浩. “新しいリスクとしての犯罪-犯罪予防と警戒原則-”. 「犯罪社會學研究」. 31号, 2006.

————. “新しいリスクとしての犯罪ー犯罪豫防と警戒原則ー. 「Japanese Journal of Sociological Criminology」. 31号, 2001.

小野義浩. “犯罪者の實態と再犯狀況-平成１８年版犯罪白書から-”. 「刑政」. 117巻 12号, 2006.

小長井賀與. “更生保護と修復的司法”. 「修復的司法の總合的研究」. 風間書房, 2006. 1.

————. “犯罪者の社會的包攝と諸機關連携”. 「 罪と罰」. 日本刑事政

策研究會. 44巻 2号, 2007. 3.
————. “更生保護における修復的司法の可能性—和解プログラムに關するビデオ調査の結果を踏まえて”. 「更生保護と犯罪予防」. 日本更生保護協會. 141号, 2003. 10.
————. “保護觀察における日本型修復的正義の可能性”. 「西村春夫古希祝賀‧犯罪の被害とその修復」. 敬文堂, 2002.
染田惠. 「犯罪者の社會內處遇の探求—處遇の多様化と修復的司法」. 成文堂, 2006.
柿澤正夫. “國民の期待ににたえられる更生保護の實現に向けて”. 「更生保護と犯罪豫防」. 日本更生保護協會. 第147号, 2006. 10.
法務省. 「第46 保護統計年報」, 2006

2. 西歐文獻

A. R. Hall & W. M Bannatyne,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Convicted Felon; How It Works Behind Prison Walls.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2000.
Alan T. Harland(Ed.). *Choosing Correctional Option that Wor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6.
B. R. McCarthy & B. J. McCarthy. Community Based Corrections. Cole Publishing Company, 1991.
Barbara Bloom. Meda Chesney-Lind. & Barbara Owen. *Women in California Prisons; Hidden Victims of the War on Drugs*.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1994.
Belknap. Access to Programs and Health Care for Incarcerated Women. Jeffrey Fagan. Treatment and Reintergration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Experimental Results. *Justice Quarterly*. Vol. 7, 1990.
C. Hairston.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Do they influence

future criminal activity?". *Federal Probation*. Vol. 52, 1988.

C. Lchute & B. Marjorie *Crime. Courts and Probation*. The Macmillan Co, 1966.

Carel B. Germain & Alex. Gitterman.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D. A. Andrew & J. Bonda.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Anderson, 1998.

David A. Prichard. "Stable Predictors of Recidivism: A Summary". *Criminology*. Vol. 17,

E. Ferri. Criminal Sociology : New Horizons in Criminal Law, 1880.

Edwin H. Sutherland & Donald R. Cress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ition Lippincott Co., 1966.

Elliott Currie.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이백철 옮김. 학지사, 2004.

F. A. Hrabowski & J. Bobbi. T도 Benefits of Correctional Educatio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Vol. 53, 2002.

Frances T. Gullen. Assessing the Penal Harm Movement.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Vol. 32. No. 3, August 1995.

Francis T. Cullen. John P. Wright & Mitchell B. Chamlin.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 Delinquency*. Vol. 45 No. 2, 1999.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Bradon K. alllegate. Control in the Community: The Limits of Reform? in Harland(Ed.), *Choosing Correctional Options*.

Frédéric Desportes et Francis Le Gunehec. Droit Pénal Gënéral 11e éd.. Economica, 2004.

G. Hannon. D. Martin. & M. Martin. "Incarceration in the family: Adjustment to change". *Family Therapy.* Vol. 11, 1984.

H. D. Jekins. I. Pendry. & S. Steuer. "A Post-release follow-up of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 Completers released in 1990-1991".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3.

Homer. "Inmate-family ties: Desirable but difficult". *Federal Probation*. Vol. 43.

Howard Abadinsky.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1994.

J. Whittaker & S. Schinke & L. Gilchrest. "The ecological paradigm in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1986.

James A. Inciardi. *A Corrections-based Continuum of Effective Drug Abuse Treat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6.

Jeffrey Fagan. & Martin Forst. Risks, Fixers, and Zeal: Implementing Experimental Treatments for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e Prison Journal.* Vol. 76. No. 1, March 1996.

Jessica Portner. Jailed Youths Shortchanged on Education. *Education Week.* Vol. XVI. No. 5, October 1996.

John W. Pearson & Gary G. Taylor. Adult Probationer Need Survey. American Justice Institute, 1973.

John W. Pearson & Gary G. Taylor. Adult Probationer Need Survey. American Justice Institute, 1973.

L. Smith & M. Silverman. "Functional Literacy Education fro Jail Inmates: An Examination of the Hillsborough County Jail Education Program". Prison Journal. Vol. 74, 1994.

Lothar Abicht · Henriette Freikamp · Uwe Schumann. Identification of skill needs in nanotechnology. codefop Panorama series, No. 120.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Advocates. *Ready, Willing and Able: What the Record Shows about States Investment in*

Children, 1990-1995. Washington, D. C., 1996.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al Education. 1999/2000.
Peter F. Drucker. the Essential Drucker.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2007.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Allyn & Bacon, 2001.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R. Cavan. *Criminology.* 3rd edition, 1965.
Richard Tewksbury, & Jon Marc Taylor. the Consequences of Eliminating Pell Grant Funding for Students in Post-secondary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s, Federal Probation. Vol. 60. No. 3, September 1996.
S. Steurer, L. Smith & A. Terace. Three State recidivism Study: Submitted to the Office of Correctional Educational. Correc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01.
T. Fabelo. The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of Inmates in the Windham School District on Post-release Employment". Criminal Justice Policy Council, 2000.
T. Flangan. Prison Education Research Project Final Report.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Center, 1994.
Thomas J. Bernard · Jeffrey B. Snipes. *Theoretical Criminology*.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Todd R. Clear & George F. Cole. American Corrections(2nd eds.). Cole Publishing Co., 1990.

Ⅲ. 인터넷 資料

http://www.kantei.go.jp/jp/singi/hanzai/dai7/7siryou3_1.pdf#search='再犯').

http://www.arsvi.com/0e/c0193.htm
http://www.moj.go.jp/HOGO/hogo10.html
http://www.sppsr . u c l a . e d u /
dept.cfm?d=ps&s=home&f=psintrohome.cfm
http// www.joins .com.
http://www.asahi.com/ad/clients/waseda/opinion/opinion246.html
http://www.bop.gov/jobs/job_descriptions/correctional_officer.jsp
http://www.drc.state.oh.us/web/ipp.htm
http://www.jup.edu .
http://www.spa.ucla.edu/ps/webfiles/con_ template.cfm
?display=concen/edu_overview.cfm&conid=edu&cat=overview
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420020529046.htm−
キャッシュ.